현안분석 2006-비교법제연구 2006-16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오 승 한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n the U.S., Japan, and Germany

> 연구자: 오승한(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Oh, Seung-Han

> > 2006. 10.



국문요약

20세기 들어서 개방되기 시장된 통신시장은 그동안 기술혁신의 변 화를 주도하면서 모든 산업에 걸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미국 과 독일, 일본 등 선진각국은 통신시장의 기술혁신을 계속 진전시키 기 위해 그 동안 존재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6년 진입장벽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시장에 대한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감 독규제로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의 경우 1996년 통신법을 통해 본 격적으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2003년에는 대폭 적인 통신법 개혁을 통해 최근의 통신시장의 새로운 패턴을 규제정책 안에 반영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 동안 엄격한 사업자 규제의 핵심이었던 사업자의 분류제도를 없애고 시장진입에 있어서 사후 신 고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1984년에 시장을 개방한 이래 2003년 통신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시설소유 기준으로 사업자로 분류하던 제도를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시설 설치와 확장의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전 규제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작업을 단행하였다.

반면에 우리법은 여전히 구시대적인 역무분류제도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보유 여부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사업자의 분류 제도와 사전규제제도는 오히려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합법적 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할뿐 실질적인 효율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각국의 규제 개혁을 참고로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새로 운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키워드 : 역무분류, 통신산업 사전규제, 통신시장개방, 통신시장 진입장벽, 통신 사업자분류

Abstract

This thesis discusses the recent efforts to reform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in particular, classification of business entities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e classification of businesses has been derived for governments to control the telecommunication world. Since 1990's, the U.S. has relieved the legal entry barrier, such as license or certifications, f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 Regardless their business areas, the tele-communication firms or Cable TV companies can enter into their business in varied business areas. Because of regulation reformations, technology has been advanced vigorously.

Germany and Japan also have followed the precedent of the U.S. telecommunication law. They abolished the classification of businesses in their telecommunication industry, which strictly divided business entities into class 1 or class 2 by their ownership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Consequently, they have eliminated the legal entry barriers by government agencies' license system. Their measures have been required to advance and incentivise innovators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Considering the reformation of telecommunication laws in the U.S., Gemany, and Japan, Korean telecommunication law needs to follow the innovative measures. Particularly, it is necessary to renovate a dividing system for business entities in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e most conspicuous characteristic of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in 21st century is the 'digital convergence'. With respect to the new trend, a new system relieving unnecessary entry barriers is required.

 Keywords: De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Entry barrier in Telecommunication, Class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Telecommunication Law, Ex ante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

목 차

| 국 문 요 약 |
|---|
| Abstract5 |
| 제 1 장 서 론9 |
| 제 2 장 통신서비스의 변화와 경쟁도입1 |
| 제 1 절 통신 서비스 개념의 정의11 |
| 제 2 절 통신시장의 개방을 위한 규제개혁13 |
| 1. 통신산업의 개방13 |
| 2. 통신산업의 역무분류와 진입규제 16 |
| 3. 통신산업의 네트워크 개방조항의 의미17 |
| 제 3 장 각국 통신 서비스의 개방과 역무분류 체계의 개혁 : 2 |
| 제 1 절 미 국21 |
| 1. 미국 통신네트워크의 기존구조21 |
| 2. 2005년 이후의 개정사항 |
| 제 2 절 독 일 |
| 1. EU 공동체규칙에 따른 통신개방요구 ···································· |
| 2. 독일 통신법의 개혁과 1996년 통신법의 성립40 |
| 3 현행 2004년 통신법상 사업자/역무분류 |

| 제 3 절 일 본65 |
|---------------------------------|
| 1. 1985년의 통신시장 개혁65 |
| 2. 2003년 법의 개정과 사업자 및 역무분류 체계75 |
| 제 4 장 결 론8 |
| 제 1 절 우리법의 문제점87 |
| 1. 현행 통신사업의 사업자 분류 87 |
| 2.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분류 문제점91 |
| 제 2 절 역무분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결93 |
| <부록> 2003년 개정 일본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55 |
| 참고문헌 |

제1장서론

통신서비스 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서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고 그 파급효과도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핵심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과 더불어 CDMA 상용화와 역무별 경쟁체제 도입 등을 계기로 통신서비스 산업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대상황과 시장상황에 적합한 규제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통신산업은 기술발전에 의해 디지털화, 광대역화, 패키지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음성・데이터의 통합서비스, 통신방송의 융합서비스, 통신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현시키면서 급성장하고 있고 규제 시스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규제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인·허가제도 및 각종 신고, 행위감독 규제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역무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고 역무분류체제는 사전규제의 강도와 범위를 제어하고 있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역무분류체계의 검토와함께 인·허가 제도에 의한 시장 진입규제제도 및 행위규제 전반에 대한 적절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유럽의 경우 이미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2001년 이래 통신사업의 역무분류규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시스템의 개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가 우리 법제의 개선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1996년 미국의 통신법, 독일의 통신법과 일본의 통신법 개혁을 비롯한 각국 통신시장의 개방과정과 정책 변화를 먼저 살펴보 고, 그와 함께 통신시장의 개방 이후 독점사업자 규제, 상호연결(Inter-

제1장서론

connection)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1996 년 통신시장 개방을 위한 개혁 규정들이 다시 2005년을 전후로 디지 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전게되고 있는 지를 고찰하며, 특히 현재 각국에서 논의되는 통신시장 역무분류의 개선방안과 개정법 제도 등 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통신시장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 2 장 통신서비스의 변화와 경쟁도입

제 1 절 통신 서비스 개념의 정의

미국 통신법상 통신의 정의는 사용자에 의해 특정된 지점들간에 정보의 형태나 내용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1) 1996년 독일 통신법 3조는 통신시스템에 의한 신호, 음성, 이미지, 소리 등의 수단에 의한 정보 전달의 기술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독일통신법이 고전적의 의미의음성통신과 전파방식에 의한 TV, Radio 및 현대적인 위성, Cable 방식에 의한 유사한 신호전달, 일반적인 데이터라인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것과 비교 할 때 훨씬 복잡하고 더 넓어진 개념 정의이다.2)

사전적 의미에서 통신의(communication) 개념은 정보전달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보, 편지 등의 모든 정보전달 서비스 수단을 포괄하게 되지만,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의 정의는 기계적 수단에 의한 정보전달을 의미하고 이것은 특정지점에서 특정지점으로의 정보송수신(Point to point transmission)과, 지점에서 다중지점으로의 전달(Point to multipoint telecommunications)을 의미하는 상업방송,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신의 형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성통신 전달의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더 세부적으로는 유선 전화장비(wire telephone)를 가장 기본형태로 생각 할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의 개념은

¹⁾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7 U.S.C 153,(PULBIC LAW 104-104 [S. 652] FEBRUARY 08, 1996), Para 48-51.

⁽⁴⁸⁾ Telecommunications. - The term 'telecommunications' means the transmission, between or among points specified by the user, of information of the user's choosing, without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information as sent and received.

Axel Spies and Jan F. Wrede, "THE NEW GERMAN TELECOMMUNICATIONS ACT",
 Mich. Telecomm. Tech. L. Rev. 1, 3-7 (1997/1998).

단순한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대화 수단의 의미를 뛰어 넘어 Data Transmission 및 기타 부가서비스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Internet의 등장과 디지털 혁명, Cable TV망과 데이터통신의 결합에 의해 TV방송으로 대표되는 기존 미디어 산업이 새로운 통신의 개념 안에 들어오고 있다.3)

현재 모든 Mass Media 자체를 기본적 통신서비스 안에 속하는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과 같이 Cable TV 망이 통신망과 같은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더이상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게 여겨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34년 통신법 제정시에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를 창설하면서 기존의 Federal Radio Commission⁴⁾과 ICC(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안에서 주간통신규제를 담당하던 부분을5 통합하여 그 권한을 FCC에 부여 하였다. 따라서 FCC에서는 방송에 관한 규제권한도행사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국 통신법은 U.S.C. Title 47 이하에서 무선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151조 이하를 의미한다. 이 통신법 규정안에는 Cable TV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있다.

이와 같이 통신개념은 가장 기초적인 유선 음성통신에서, 무선망을 이용한 음성과 데이터, 이미지 동시 서비스 형태, 더 나아가 위성통신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사람의 음성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에서 출발하여 음성 전달을 부가적 서비스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혼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기존의 음성통신 서비스, 데이터통신 서비스 등의 서비스 내용으로 그 상품의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그

^{3) &}quot;Technology and the Media", Microsoft Encarta Encyclopedia 99. 1993-1998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4) 1927}년 Radio Act에 의해 무선방송규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

^{5) 1910}년 Mann-Elkims Act에 의해 설립. 36 STAT . 539(1910).

만큼 어려워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6)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련상품의 범위획정이 필요하게 되지만, 통신 사업자는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통신시스 템을 통한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성질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하나의 대체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2 절 통신시장의 개방을 위한 규제개혁

1. 통신산업의 개방

일반적으로 자연독점산업인 통신산업의 통신서비스가 창출하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일반 공공에게 돌리면서 약탈적 가격 책정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규제의 대표적인 이론이다.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규제는 진입규제 방식에 의한 것이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음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영역으로,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는 국영기업이, 미국의 경우는 AT&T가 인가독점체제로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1970년 말 새로운 방식의 무선음성 통신이 등장 하고 Computer Data Communication 등장하였지만,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각 별개의 것을 취급되어, 서비스

⁶⁾ 예를 들어 무선이동통신의 수단인 Cellular Mobile Telephone Service는 25 MHz of spectrum를 사용하고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PCS)는 153 MHz of spectrum 를 사용하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체제이다. 실제로 미국의 1994년 United States v. Motorola, Inc., 59 Fed. Reg. 55,708, at 55,709 (Dep't of Justice-Antitrust Div. 1994) 소송에서 DOJ는 Cellular 시장만을 유일한 상품시장으로 정의하고 PCS등은 별개시 장으로 구분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시장의 형태상 이들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근거로 기술적 차이가 아닌 소비자들의 행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동통신 처음 가입시에는 양 체제의 장비비용과 기타 가입비용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사후에 PCS가입자가 Cellular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신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단계에서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대체탄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단말기 보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이와 동일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행해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통신 방송의 엄격한 분리정책에 의해서 1996년 통신법 개정 전에는 Cable TV회사는 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었고, 전화사업자도 Cable TV사업에는 진출할 수가 없었다. 또 시내전화사업자는 장거리전화 서비스를할 수 없었고, 전화장비의 제조사업도 할 수 없었다. 장거리 전화 사업자 역시 시내전화에 대한 진출과 다른 유사업종에 대한 진입제한에 묶여 있었다.7)

국가기관이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80년 중반까지 모든 통신 서비스의 제공이 국가국영기업체에의해 묶여 있었고, 80년 중반부터 무선음성통신서비스에 대한 허가가민간업자에게 최초로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수차에 걸친통신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근거는 통신시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경쟁에 의한 효율성 창출이 규제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고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주된 근거인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이라는 논리가 더 이상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독점사업자는 자연독점에 의해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입장벽에 의한 규제의 보호로

⁷⁾ 이와 같은 진입제한의 중요한 근거는 약탈적 행위가능성과 사회정책상의 고려에 의해서 이다. 먼저 전화회사가 Cable TV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Pole Attachment와 같은 필수적 설비에 접근을 거부하여 다른 Cable TV회사의 비용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독점화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차별적 상호연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반면에 그들 Cable사업자의 가격을 올리는 동안 전화 회사는 그들의 전화서비스에 대한 비용 안에 Cable Service에 들어가는 비용을 숨김으로써 그들의 Cable Service에 대한 비용은 더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독점 탄생의 발판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주요한 근거는, 지금까지 일반거주자 들에 대한 전화요금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낮았는데 그것은 전화비용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강제 했기 때문으로 만일 Cable System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사업자고객을 주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일반 사업자로부터 이익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요금을 상호보조 해왔던 것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 거주자들의 편익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그 지위를 누리고 있을 뿐이고 결국 이것은 시장의 왜곡과 기술발전의 방해요소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유선시내전화망에 대해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Cable network, 이동전화, 지상 microwave network, 위성통신 등이 개발되어 있고, 상호접속 서비스를 통한 소규모 network간의 연결 등으로 인해 규모가 작으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8) 이와 같은 논지에서 통신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기술적 통합(Technological convergence)9)을 더 이상 법률상의 형식적 구분에 의한 진입장벽에 의해 막아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된다. 즉 통신법상의 여러 진입제한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술발전을 저지시켜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10) 이와 같은 논리는 통신기술 특히 Cable TV망이 가장 발달한 미국 뿐만 아니라 국가공영 체제를 운영해온 기타 국가에서도 주장되는 근거이다.11)

통신시장개혁과 개방화의 의미는 1995년 이후의 각국의 최대 문제 사안이 되고 있으나 실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목적과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현존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동종유사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유발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영기관에 의해 배타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공 되었던 국가들에서는 먼저 국가기관의 사영화와 시장개방을 동시에 추진하여 자유시장형성에 주목적을 두고

⁸⁾ Elizabeth A. Nowicki, "COMPETITION IN THE LOCAL TELECOMMUNICATIONS MARKET: LEGISLATE OR LITIGATE?", 9 Harv. J. Law & Tec 353, 356-358(1996).

⁹⁾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신과 Mass Media의 결합 현상 등을 말하는데, 현재 Cable TV line을 통해서 음성전송이 가능하고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게 되는 등 유 사방식으로 이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통신망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소규모 비용으로 이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¹⁰⁾ Thomas G. Krattenmak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9 Fed. Comm. L.J. 1, 3-5 (1998).

¹¹⁾ Richard E. Nohe, "A Different Time, A Different Place: Breaking Up Telephon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48 Fed. Comm. L.J. 307, 323 (1996).

있다.

다만 양자 모두 경쟁유도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Cable TV와 같은 기존 유사업종사업자에 의한 시내전화서비스의 경쟁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독일, 일본 등은 기존 국영기업의 사영화와 사영화된 기업의 분할 등을 통한 새로운 경쟁자 진입에 의한 경쟁유도를 목적으로 하였다.

2. 통신산업의 역무분류와 진입규제

통신산업이 경쟁에 개방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정부의 산업전반에 대하 개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통신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통신산업은 다른 산업과 다른 필수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산업전반의 구조와 사업자의 활동이 일반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도, 통신산업안의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주파수, 통신망이라는 점에서 사업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각각의 분류에 맞는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역무분류에 의한 사업자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각 사업자들의 분류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신고제 등의 등급별 규제를 가함으로써 단계별로 적합한 진입규제를 하기가 용이하다. 또는 사업자별로 부담할 보편적 역무와 같은 특수한 의무를 부담을 지우는 것도 사업자 분류에 의해 용이하게 실시될 수 있다.

다만,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사업자별 분류 방식과 규제방식의 분류, 그리고 그에 의한 진입장벽의 설치가 오히려 통신기술의 발전 을 침해하고 서비스의 수요자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 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996년 미국 연방통신법 이외에, 사업자들을 엄격히 분리하고 진입장벽을 허용하지 않던 독일과 일본의입법례는 엄격한 사업자별 역무분류를 규정하였으나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모두 재개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역무분류 규정의 중요성 때문에 통신산업에서 이러한 역 무분류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체계 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된다.

3. 통신산업의 네트워크 개방조항의 의미

미국과 독일의 통신시장이 독점 혹은 국가운영사업에서 경쟁체제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현존시스템에서 경쟁자들이 완전한 대안적인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일 정기간 동안 이 새로운 경쟁자들은 그들의 장비와 서비스 제공을 위 해 기존회선의 이용을 현존공급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기존 서비스제공자의 네트워크 개방을 요구하게 되고, 다른 서비스제 공자에게 자신의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방 및 상호연결의 개념은 특히 기존의 음성통신이 아닌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 사업 자의 증가와 함께 많은 논란이 되었다. FCC는 초기에 이러한 부가서 비스(Enhanced Service)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기 존 전화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만 규제대상으로 하였지만 결국 COMPUTER Ⅲ 결정을 통해 전화회사에게도 전면적인 허용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음성전화 회선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신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에게 자신의 선로망 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결국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시장은 기존의 회선을 가지고 있는 자에의해 완전히 잠식당할 것을 초래하고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개방 네트워크조항(Open Network Provisions)에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개방의 문제 안에는 각 시스템들간의 상호연결 (interconnection)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즉 완전한 다른 대체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소비자들 간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 네트워크의 상호연결 (Interconnection)이 필요하게 된다.12)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가입자가많은 사업자만이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서 결국 기존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에 의해 통신시장은 독점화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상호연결 규정이 통신시장에서 실제 경쟁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이다. 특히 독점사업자가 존재한 상태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통신시장에서 이와 같은 규정은 경쟁의 확보차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과 독일의 법제들은 각기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자세한 조항을 두고 있다.13)

개방네트워크조항과 상호연결규정에 대한 개념은 양자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 네트워크조항은 현재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통신업자에게 주로 사용 되고 사업자와 사업자 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주로 된다.14) 반면 상호연결(Intercon nection)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도 있다.15) 그러나 상호연결도 현존시장의 사업자들과 신규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신규경쟁자에게 유리한 제

¹²⁾ Michael K. Kellogg et al.,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564-576 (Little, Brown & Company Limted, 1992).

¹³⁾ TKG §§33-39; 47 U.S.C. 251.

¹⁴⁾ See, Kellogg et al., op.cit., p.558.

¹⁵⁾ See, Id., p.564.

도이므로 양자구별의 실익은 적어진다. 또 네트워크 개방자체의 의미 안에 상호연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접속의 정 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원칙으로는 동등접속의 원칙, 정 보공개의 원칙, 망의 신뢰성 보장원칙, 접속료 원가주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조항의 변천과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경쟁당국이 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보장과 경쟁의 조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고찰할 수 있게 한다. 특히최근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핵심이 여전히 경쟁정책에 맞추어져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개방조항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각국 통신 서비스의 개방과 역무분류 체계의 개혁

제 1절 미 국

- 1. 미국 통신네트워크의 기존구조
- (1)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Law)에 의한 개혁

1996년 법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고 모든 통신시장을 경쟁에 개방함으로써 발전된 통신, 정보기술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이다.16) 이법은 장거리 회사가 지역전화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지역 전화사업자가 특정조건 하에서 장거리 시장에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더 나아가 1996년 법은 1934년 법 제221(a)조를 삭제하였는데, 구법 221조(a)는 이 산업에서 합병에 대한 반독점법의 예외를 인정할 권한을 FCC에게 부여했었다. 그러나 1996년 법은 반독점법의 우회를 막기위해 이러한 예외 인정 권한을 삭제한 것이다. 특히 이것은 지역전화사업자와 Cable TV사업자간의 합병을 고려한 것이다.17) 즉 의회는 양산업 사이의 구별이 불분명해 질 것을 걱정했고, 증가되는 산업결합이 잠재적 재독점화를 야기 할 수도 있는 경우에 적절한 반독점적 감독을 유지하기를 원했다.18)

따라서 1996년 법은 독일 통신법(TKG)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잠 재적 문제인 카르텔 관청과 통신규제기관 사이의 충돌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된다. Cable TV와 유선통신, 다른 Media Company(e.g. Time

¹⁶⁾ S. Rep. No. 104-230, at 1 (1996).

¹⁷⁾ Douglas B. McFadden, "Antitrust and Communications: Changes Aft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9 Fed. Comm. L.J. 457, 462 (1997).

¹⁸⁾ S. Rep. No. 104-230, at 200B01.

Warner v. AOL)들의 결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런 폭넓은 임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반독점적 감독의 요구는 필연적이다고 할 것이다.

또 시장을 경쟁에 개방 시킨 이상 반독점법의 적용은 시장의 경쟁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고 할 것이고, 기업결합이 통신산업 내부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산업의 사업자와 사이에서 빈번한 현 실에서 타당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원칙적 적용에 따라 결국 통신회사를 합병하거나 인수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3가지 독립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즉 The Clayton Act 제7조에 따른 반독점소송19,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합병시에 DOJ(the Department of Justice)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Hart Scott Rodino Act에 따른 심사20), FCC의해 발급된 주파수 방송면허 양도를 포함한 경우 연방통신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이익 기준에 의한 심사21)를 받게 된다.22) 특히 방송면허의 양도가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심사시를 할때는 친경쟁적 이익과 반경쟁적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한 경쟁의 침해여부가 핵심적으로 판단되고, 그외의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이 함께 고려된다.23)

(2) 1996년 법의 역무분류와 인가제도

1) 규제의 특징(각주의 규제권한과 연방의 규제권한의 분리)

미국의 1996년 통신법은 1934년 통신법의 상당부분을 개혁하여 통신규제 시스템의 전부분에 대한 개혁을 가져왔으나, 1934년 법의 일

¹⁹⁾ Clayton Act, 7, 15 U.S.C. §18.

²⁰⁾ Hart-Scott-Rodino Act, 15 U.S.C. §18(a).

^{21) 47} U.S.C. 309. See also 47 U.S.C. §§313, 314.

²²⁾ Douglas B. McFadden, op.cit., p. 460.

²³⁾ *In re* Craig O. McCaw and AT&T For Consent to the Transfer of Control of McCaw Cellular Comm., Inc. and its Subsidiaries,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9 FCC Rcd. 5836, para. 57, 75 Rad. Reg. 2d (P & F) 1345 (1994).

부로서 주당국과 연당 규제당국(FCC) 이중적 규제 시스템은 그대로 남겨놓은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연방과 주규제당국의 이중적 규제시스템은 연방국가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인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주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통신망(Local Network)과 장거리 통신망(Long Distance Network)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이중적 규제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저 1934년 연방통신법은 각 주의 규제 권한을 주간거래(interstate commerce)에서 분리하여 각 주가 주내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도록 주의 규제권한을 인정하였다. 특히 법은 FCC에게 유선·무선주간통신망을 이용한 통신사업과 국제거래에 관한 행위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각주는 무선·유선에 관한 주내의 통신서비스를 규제할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24) 법은 양자의 권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유선·무선 통신은 "그러한 서비스 제공하기위한 모든 기계, 설비, 시설을 포함한다고"고 규정하고, 특히 주내의규제범위는 특히 요금의 부과, 역무분류, 서비스, 설비 등 주내의 통신서비스와 연결된 것들에 확장된다. 25)

다만, 법문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규제되는 서비스가 주내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간서비스에 해당이 되어서 FCC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를 않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내용은 주간 서비스이지만 통신시설은 특정 주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혹은 주내 서비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서비스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사안들에 따라 판례는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규제당국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해왔

^{24) 47} U.S.C.A. §151 (West Supp. 1987).

²⁵⁾ Id. § 152(b).

다. 그러나, 각주의 규제당국은 연방규제당국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최소한 연방법상의 진입장벽 철폐규정과 같은 우선조항에는 그 규제권을 복종해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26)

이와 같이 1996년 법은 1934년 통신법에서 주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는 1934년 통신법 §2(b)를 남겨놓음으로서 이와 같은 이중적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규제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후에 언급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연방통신법의 개혁논의는 이와 같은 주당국와 연방당국의 이중적 규제 시스템에 대한 혼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 주요 내용

가. 역무분류와 인가제

미국 통신법상 인·허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역무의 분류는 1990 년대 후반의 독일이나 일본의 법제와 비교하여 매우 개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유·무선이나 위성통신, 기계설비, 네트워크 보유 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파수 할당이나 통신망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를 받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2000년대 독일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되는 기본적인 방향이 되었다.

우선 연방통신법은 통신서비스(Communication Service)를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형식이나 내용의 변화 없이 전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정보서비스는 전기통신을 통하여 가용한 정보를 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연방통신법은 가장 중요한 분류대상으로 Common Carrier와 그 외의

^{26) 42} U.S.C. §253 (1996).

Non-Common Carrier로 통신사업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신법상 인가제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은 Common Carrier에 한정된다. Common Carrier는 설비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비차별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연방통신법에 의한 Common carrier는 유선·무선통신에 의해 주간 통신사업 혹은 국제 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혹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주간 혹은 국제 무선송출 업체를 의미한다.27) 이러한 규정은 우선 설비보유에 관계없이 Common Carriers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행위에 관계없이 우선 설비보유를 규제의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미국 연방통신법상의 규제의 특징은 사전허가제를 통한 진입규제보다 시장진입 후 행위규제의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통신서비스에서 일정한 인가시스템은다양한 국가 목적과 통신시스템 요건의 유지와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Universal Service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Interconnection의 확보 등을 위해서 일정한 인가제도가 필요 된다.28) 따라서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최소한의 인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지역 통신서비스 시장(Local Exchange Market)은 수십년 동안 새로운 진입자가 없는 독점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자에 대한 인가제도는 사실상 불필요했다. 반대로 장거리통신은 1969년 경쟁에 최초로개방된 이래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혹은 선로 설치를 위해 FCC로부터 인가를 얻어야만 했다.29) 1934년 법 47 U.S.C. 214조는 인가 부

^{27) 47} U.S.C. §153 (10).

^{28) 47} U.S.C. §301이하에서 Radio broadcasting 에 대해서는 면허(licensing)을 요구하고 있다.

²⁹⁾ In Re MCI, Decision, 18 F.C.C. 2d 953, 16 Rad. Reg. 2d (P & F) 1037 (1969), reh'g denied,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21 F.C.C. 2d 190, 18 Rad. Reg. 2d (P

여시 공공이익, 편리성 혹은 필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달도록 했다.30) 1996년 법도 Video Systems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기존의 §214조와 유사한 인가제(certification)를 기본적으로 유지해 오고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Common Carrier 중 통신망을 설치하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되는 경우 FCC의 인가가 필요하다. 즉, 47 U.S.C. §214조에서는 새로운 통신시설의 확장, 신설, 감축, 서비스 폐지를 위해서 FCC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단 인가를 받은 후 47 U.S.C. §201조 이하에서 Common Carriers³¹⁾는 적정요금의 책정, 차별 금지의무를 지고 47 U.S.C §203조에 의해 요금 신고의무를 진다.32) 반면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Connecting Carriers는 이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그 구체적인 서비스의 활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의 경우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이에 따라 FCC는 통상적으로 신규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다만인터넷 전화(phone to phone방식)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통 통신서비스와 같이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부담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규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FCC Order를 통하여 통신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Frame Relay, ATM은 가공전송이므로 정보서비스라는 견해도 있으나, FCC는이들 서비스의 주목적이 전송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라고 결론을 내렸다.

[&]amp; F) 226 (1970).

³⁰⁾ FCC v. RCA Comm., Inc., 346 U.S. 86, 90 (1953).

^{31) 47} U.S.C. §153 (10) "Common carrier"는 동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수를 목적으로 유선, 무선에 의해 주간, 국제간 통신업 혹은 주내, 국제적인 에너지무선 전송에 종사하는 통상적인 통신업자를 말한다. 다만 무선방송사업자는 여기에서 제 외 된다.

^{32) 47} U.S.C. §§201-203.

결론적으로 미국 1996년 통신법의 전반적인 규제내용은 시설여부에 관계없이 통합적인 사후 인가제를 채택한 점에서 진입장벽을 최소화 하고 통신망에 대한 개방정책을 가장 포괄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오히려 기존의 주내전화망에서 대부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시내전화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들에 대한 경 쟁자 육성에 가장 핵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ECs 에 대한 규제

미국 1996년 연방통신법의 핵심은 각 지역의 독점 시내전화 사업자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에서 독점에 대한 우선적 법규는 Sherman 법 2조를 들 수 있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독점시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적용되는데 통신시장에서는 주로 AT&T와 그의 자회사들(BOCs)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었다. 다만 Bell system의 경우 주의(state) 인가독점으로 주의 규제안에서는 반독점법의 직접적 적용을 받지 않았었고, 반독점법의 특별취급을 받았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Bell System은 많은 연방반독점소송과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 의한 요구를 따라야 했다.33)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까지 비교적 단순화 되고 있다. BOCs는 그의 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역전화서비스업자(LECs)들이었다. 또 AT&T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시장지배적인 장거리통신사업자였다. 통신 서비스가 전통적으로 공공재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잡한 규제규정에 따라야 했고 대신에 이들은 유리한

³³⁾ AT&T 사건에서도 "state action"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면제를 인정한 Parker v. Brown, 317 U.S. 341 (1943) 사건을 이용하면서 AT&T Consent Decree에 대한 이의가 신청되었지만, 대법원은 "이것은 연방 반독점법의 적용영역이고 반경쟁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함에 있어 법원이 주규정(state regulation)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심재판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MARYLAND v. UNITED STATES, 460 U.S. §1001.).

지위를 보장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런 유리한 규정중의 하나는 FCC가 통신산업 안의 특정합병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면책권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34) 1996년 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더이상의 기득권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35)

1996년 법은 시장지배적지위 규제에 있어 주로 독점 지역전화 사업 자인BOCSs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존Cable 사업자와의 합병 및 경쟁관계를 의회는 염두에 두고 있었다.36) 그것은 이미 장거리 시장은 1971년 MCI에 장거리서비스 인가를 줌으로써 경쟁에 개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37) 따라서 1996년 통신법은 BOCs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일한 지역전화사업자(LECs)로 되어있는 현재상황을 경쟁적 상황으로 바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단1996년 법은 지역교환사업자를 경쟁에 개방하는 것이고 모든 지역전화 사업자는 그 지역을 벗어나는 LATA간 시장에(장거리 통신서비스)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BOCSs에 대해서는 통신법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38) 특히 BOCSs가 지역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지위를 누리고

^{34) 47} U.S.C. § 221(a) (1995), repealed by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Pub. L. No. 104-104, 110 Stat. 56 (to be codified at scattered sections of 47 U.S.C.).

³⁵⁾ McFadden, op.cit., at 460.

³⁶⁾ Id., at 461-463.

^{37) 1963}년 MCI의 시작부터 Chicago, Illinois, and St. Louis, Missouri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CC로부터 허가를 받으려고 했다. 소유주인 John Goeken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구리선 전화망 대신에 새로운 기술인 Microwave Communications을 이용하여 장거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 당시 AT&T는 정부규제 독점자로서 미국 전역의 장거리 통신망을 통제했는데 Major Cities간에 장거리 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시골 소비자들에 대한 그들의 서비스를 보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던 AT&T는 MCI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MCI는 AT&T가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제거하는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고, 공동행위를행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 하였다. 또한 이 회사는 FCC와 의회에 로비를 시작했고, MCI의 노력은 결국 성과를 얻어 1971년 MCI는 AT&T와 경쟁하는 FCC로부터인가를 받은 최초의 통신회사가 되었고 이로써 장거리통신시장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MCI Communications Corporation", Microsoft Encarta Encyclopedia 99. 1993-1998 (Microsoft Corporation).

^{38) 47} U.S.C. SUBCHAPTER II, PART III(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BELL

있는 것을 고려해 특별규정은 BOCSs가 INTERLATA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허용되기 전에 BOCSs의 지역에서 실질적 경쟁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였다.39)

특히 BOCSs는 그의 지역안에서 INTERLATA서비스를 제공하지 전에 FCC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 BOCSs는 상호연결 요건과 In Region Test를 만족해야만 한다.40) 즉 271(c)는 먼저 BOCSs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BOCSs지역 안에 존재하는 "BOCs의 통신회선 시설을 이용하는 경쟁자"와 접근(ACCESS), 상호연결(INTERCONNECTION)에 관한 구속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BOCs의 통신회선 시설을 이용하는 경쟁자"는 BOCs자신의 설비를 토대로 배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통신 서비스업자의 서어비를 재판매하는 자이다. 다만 의회는 BOCSs서비스의 단순한 재 판매자가 아닌 비계열 경쟁사업자가 그 지역에 존재할 것을 의도했었다.41) 다만 BOCs의 상호연결, 접근 제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통신업자가 1996년 법 제정 10개월 안에 진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독일의 경우 전체통신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 반해, 미국은 장거리 시장은 10여년 전에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1996년 법은 지역 전화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집중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BOCSs는 이익이 나는 장거리 시장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이 먼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BOCSs는 장거리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의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BOCSs는 지역서비스에서 경쟁자에 대한 현존장벽을 제거할 강력한동기를 가지게 되었다.42)

OPERATING COMPANIES), 47 U.S.C. §§271-276.

^{39) 47} U.S.C § 271(6)(2)(B).

⁴⁰⁾ Id. § 271(c)(1)(A).

⁴¹⁾ S. Rep. No. 104-230, at 148 (1996).

⁴²⁾ Kress, op.cit., at 602-603.

다. 네트워크 개방 및 상호연결제도

전화서비스 대부분이 Bell사에 의해 운영되던 미국의 경우 전화산업 초창기부터 상호연결은 핵심적인 문제였다. 1895년 Bell사의 전화에 대한 주 특허권 소멸로 경쟁이 시작되었지만,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된 소비자간의 통화를 위해서는 변환장비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러한 Switching Equipment가 전화발명 후 1876년에 개발되었다. 그 당시 1907년 Bell의 자회사가 아닌 독립적인 회사들은 Bell과 동일수의 기지국을 소유했었다. 그러나 훨씬 우수한 장거리 서비스 특허기술을 보유했던 Bell회사는, 그의 자회사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상호연결이나 장비공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경쟁사업자들은 급격히 파산하거나 Bell에 의해 인수되어졌다. 즉 Bell의 상호연결(Interconnection) 거부로 인해 독점이 탄생했다.43)

초기 연방법원은 당시 Mann Elkims(1910) 연방법이 통신을 "Common Carriers"라고 정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와는 달리 어떤 상호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1934년 법은 FCC가 "공공의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Bell사와 다른 통신업자간의 상호연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44) 그러나 이것은 전화시스템이 자연독점사업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공공의이익을 근거로 하게 된 것은 FCC와 법원이 경쟁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된 그 이후의 일이다.45)

1976년 FCC가 "common carriers"에게 장거리 서비스를 포함한 개인 네트워크의 재판매를 경쟁자에게 허용하도록 요구하면서 상호연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46) 그외 1996년법 전의 FCC의 태도 변화는

⁴³⁾ Kellogg et al., op.cit., at 8-11.

⁴⁴⁾ Kellogg et al., op.cit., § 1.3.2.

⁴⁵⁾ See id, § 3.4.

⁴⁶⁾ Charles H. Kennedy, An Introduction to U.S. Telecommunications Law 3, 31 (1994).

AT&T, GTE등의 동의판결과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47)

먼저 AT&T사건에서 MFJ는 LECs가 소비자에게 그들이 선택한 LXCs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고, 지역소비자와 모든 LXCs 간의 상호연결을 소비자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했다.48)

BOCSs와 몇몇 소수의 독립적인 사업자들은 기본적 음성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제공하고 회선망을 통제하기 때문에 소위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s"로 음성메세지, 정보, on line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전화 회선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개방네트워크 구조를 책정하고 그러한 사업자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전화서비스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었다.49) 결국 BOCs는 그 자신의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요금, 동일한 기초하에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더 나아가 비규제 서비스로 부터 규제분야의 분리를 요구하는 회계규정이 상호보조를 막기 위해 적용되었다.50)

1996년 법은 1934년 법에 251조를 새로 추가하여 모든 통신업자의 상호연결을 일반적 의무로 부과하고, 다시 지역전화사업자에 대한 요 구,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현존 지역전화사업자의 추가적인 의무로 세분화하였다.51)

먼저 일반적의무로서 모든 통신회사는 직접 간접적으로 다른 통신회사의 장비, 설비에 연결이 요구되고, 이 새로운 조항은 255조와 256

⁴⁷⁾ Kress, op.cit., at 607-609

⁴⁸⁾ Kellogg et al., op.cit., § 5.2.

⁴⁹⁾ *Id.*, § 11.6.1.

⁵⁰⁾ Kennedy, op.cit., at 68.

^{51) 47}U.S.C.251 (a) General duty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b) Obligations of all local exchange carriers, (c) Additional obligations of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s.

조의 요구와 맞지 않는 네트워크기능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52) 다음으로 지역전화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특별의무 5가지를 부 과한다.53)

- 1) LECs는 그들 서비스의 재판매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 2) LECs는 다이얼 동등성(dialing parity) 을 제공해야만 한다.54)
- 3) LECs는 기술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전화번호에 이전성(portability) 을 제공해야 한다.55)
- 4) 1934년 법 224조에 부합하는 통행권을 허용해야 한다.
- 5) 다른 사업자와 상호보상 조항을 책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를 자치하고 있는 현존 LECs에 대해서는 다른 의무가 특별히 부과된다.56)

- 위의 5가지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무
- 2) 상호연결을 요구하는 통신사업자의 장비, 시설의 사용을 위해 현존 지역통신네트워크에 상호연결을 제공할 의무 그의 자회사 혹은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조건하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호연결을 제공할 것
- 3) 분리가능한 한도내에서 경쟁사업자가 요구하는 바대로 설비를 분리하고 분리부분에 접속시켜줄 의무(unbundled access)
- 4) 가입자에게 소매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도매가격으로 서비스를 판매할 의무 및 재판매금지와 차별적 제한조치를

^{52) 47}U.S.C. §251 (a).

^{53) 47}U.S.C. §251 (b).

⁵⁴⁾ 가입자가 어느 사업자에 가입하던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의무를 말한다.

⁵⁵⁾ 가입자가 현행전화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 업자를 바꾸더라도 현재번 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6) 47} U.S.C. § 251(c), § 251(f).

하지 않아야 할 의무

- 5) 서비스 제공과(transmission) 과 전달(routing)에 필요한 정보, 설비 변경시 이를 합리적 방법으로 통지할 의무
- 6) 다른 통신업자가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신의 서비스제공에 방해받지 않은 한도에서 이를 인용할 의무

상호연결을 위한 약정에는 현존지역전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약정과 자발적 약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재에 의한 강제약정이 있다. 주위원회는 이러한 교섭을 중재하는 기능을 하고 FCC는 주위원 회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 다.57) 자발적인 약정은 관련주위원회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58)

2. 2005년 이후의 개정사항

(1)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에 대한 개혁조치 필요성 증가

최근 연방통신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시화된 것은 디지털시대의 통신법(the Digital Age Communications Act) 계획을 통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59)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워크그룹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2006년 이후 통신법 개혁은 주로 연방과 주정부간에 분리된 통신사업에 대한 규제권한을 연방정부의 권한 안으로 통일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인터넷 통신시장의 변화와 기술적 통합을 통해 주간 통신서비스와 주내의 통신서비스간에 근본적인 차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VoIP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망을 통한 일반통신서비스로서 통신설비가 어디에 있든지 미국 전지역을 포괄하는

⁵⁷⁾ Id. § 252(e)(5).

⁵⁸⁾ Id. § 252(a), (e).

⁵⁹⁾ See Progress & Freedom Found., Proposal of the Regulatory Framework Working Group Release §1.0 (2005), http://www.pff.org/issues-pubs/other/050617regframework.pdf.

주간 거래에 관한 서비스가 된다는 점에서 이전에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주간 통신서비스와 주내의 통신서비스를 구분하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규제기관의 구분은 피 규제자에 대한 법적 혼란만을 야기하였고, 특히 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정책을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통합이 필수적이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에 대한 부담은 각주의 지역적 사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주의 개별적 규제가 타당하다고 지적된다. 또한 주내의 기본 거주지에 대한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제도 여전히 각 주정부의 규제권 안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주정부와 연방간의 권한 배분이 실질적인 화제가 되는 현행 미국 통신법의 개정은 이미 1996년 법에서 진입규제를 최소화 하고, 설비보유에 상관없이 사후적 인가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최근의 기술변동에 따른 규제개혁의 영향력을 비교적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개방의 정도가 상당히 낮았던 다른 국가의 경우 오히려 1996년 미국법과 같은 역무분류의 철폐로 개정방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상호연결의무, 전기설비의 강제제공 규정 등의 변화

1996년 법의 개정이후 법의 규정은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통신망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였던 연방법상의 상호연결의무혹은 망세분화(Unbundling) 규정과 관련해 FCC는 계속 발전된 Order를통해 그 범위를 조정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특히 망세분화 규정의경우, 때로는 통신망에 새로운 경쟁자를 유도하여 통신서비스에 대한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자본과 노력에 의해 신기술로 완성된 망에 다른 경쟁자의 무조적 접근을 강제하는 망세분화 규정은 기존의 통신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무엇보다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위험으로 인해 사업자들이투자를 꺼리게 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2005년까지 망세분화 규정들은 최소한의 부분으로 제한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전기통신설비제공의 강제 규정과 관련하여, 1996년 개정된 연방통신법은 독점적 시장구조 형태였던 지역 유선전화망 시장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상호연결(interconnection), 재판매 (resale), 망세분화에 의한 네트워크망의 임대(the leasing of unbundled network elements) 방식에 의한 신규진입의 유도를 시도하였다.60) 이중에서도 특히 망세분화에 의한 네트워크망의 제공의 강제를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설비가 아닌일반설비제공 의무에 대해서 FCC는 "접근을 요구하는 특정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접근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당해 네트워크 요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근요구 사업자의 능력에 손상을 가하는 지를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61)

여기서 손상요건이 문제되는데, 1996년 통신법 개정직후 FCC는 손 상요건에 대해, "네트워크 요소의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경쟁자가 당해 네트워크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에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능력의 손상"이라고만 단순히 해석 하였었다.62)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연방대법원은 1999년 AT&T Corp. v. Iowa Utils. Bd 사건63)을 통해 시행규정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

^{60) 47} U.S.C.A. §251-252.

^{61) 47} U.S.C.A. §251(d)(2).

⁶²⁾ First Report and Order, Implementation of the Local Competition Provis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11 F.C.C.R. 15,499 (1996).

^{63) 119} S. Ct. 721 (1999).

적하고 FCC로 하여금 강제 망세분화 의무를 부과할 구체적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AT&T 사건에서 법원은 FCC가 공급대체 가능성을 무시하였음을 지 적하고, FCC가 현존 사업자 네트워크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네트워크 요소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당해 네트워크 안에서의 서비스 제공비용의 상승, 품질저하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64) 결론적으로 현재 네트워크의 접근을 요구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제 접근권을 요구할 실익이 없 음을 지적하고 있다.65) 이러한 판결의 지적에 따라 FCC는 망세분화에 의한 설비임대 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단순히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내부내 경쟁사업자의 가격상승이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최종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외부의 대체재의 존재가능 성에 중점을 두는 규칙을 제정하였다.60 또 2003년에는 동 규정의 재 개정을 통해 강제설비제공이 요구되는 필수설비의 범위를 제한하고 강제설비제공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수요자의 규 모, 진입장벽의 크기, 기술변화에 따른 대체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 한 통합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67)

⁶⁴⁾ AT&T v. Iowa Utils. Bd., 119 S. Ct. 721, 735(1999).

⁶⁵⁾ AT&T v. Iowa Utils. Bd., 119 S. Ct. 721, 754 (1999) (Breyer, J.,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⁶⁶⁾ Local Competition, Third Report And Order And Fourth Furthe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ebruary 11, 2000) CC Docket No. 96-98 para 8.

⁶⁷⁾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 FCC는 광설비를 사용하는 가입자 선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세분화 의무를 완화함/동선 가입자 선로에 대해서는 제공의무를 유지하였으나 FTTH(Fiber To The Home) 가입자 선로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Id. para 278).

다만 기존 동선 가입자 선로을 대체하기 위해 광케이블을 초과구축한 지역은 협대역 서비스용으로 한정하여 광케이블에 대한 제공의무를 부여함. 또 기업용중 전국적으로 DS1, DS3 및 미사용 광케이블에 대하여도 기존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제공

제 2 절 독 일

독일 통신산업의 법적구조는 EU기준과 유사하다. 그것은 독일의 통신시장개혁 배경에 EU 통합에 따른 통신시장 개방 요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U통합과정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을 위한 협의와 기준에 따라 독일통신체계가 수정되어 왔다.

1. EU 공동체규칙에 따른 통신개방요구

자유화에 관한 EEC 조약 90조 2항은 공익 서비스의 유지권한을 가진 기관 혹은 수입증대 독점의 성격을 가진 기관은 경쟁을 규율 하는이 조약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국가통신독점을 깨고시장을 경쟁으로 이끄는 우선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국가독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자간의 공동행위에 관한 제85조와 독점에 관한 86조로 대표되는EU 경쟁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들의 직접적 적용은 많은 잠재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유럽통신시장 대부분이 국가독점과 직접적인 국가감독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 독점사업에 대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입법조치들이 우선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EU의 경쟁과 통신법을 부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통신입법의 해석과 EU경쟁법과의 조화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해 권고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된다.68)

특히 위원회는 미국 일본 등의 장비 서비스 시장 자유화 요구에 따라 유럽 통신시장의 자유화에 관심을 집중 시키게 되고 특히 두개의

의무를 부여 하였으나, 주별로 손상여부에 대한 시장분석에 따라 제공의무를 철회 할 수 있다.

^{68) 91/}C233/02.

정책 목표를 두게 된다. 그 중 하나는 국가독점의 파괴와 통신시장의 경쟁 및 자유화 이고, 두 번째는 유럽전역을 거쳐 통신 상품과 서비 스 시장에서 회사들이 동등하게 경쟁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이었다.69)

이러한 개혁은 1987년의 Green paper⁷⁰⁾를 시발점으로 진행되었고 자유화와 회원국의 국가독점사업의 사유화가 진행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이사회는 이러한 녹서의 목표를 1988년 6월 30일 승인하였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관련기관들이 시행하도록하였다.⁷¹⁾ 이에 따라 1990년 6월 28일 유럽 위원회의 통신서비스 시장과 자유화, 개방 네트워크 조항의 이행에 대한 고시가 발표되었다. 먼저 자유화에 대한 고시인 "Service directive"는 EU통신시장이 국가독점체제에서 자유화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⁷²⁾ 두 번째 개방 네트워크에 대한 고시인ONP(Open Network Provisions)는 모든 네트워크와 통신사업자간에 접근 개방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⁷³⁾ 이 ONP고시는 공중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접속원칙의 기본규

Incorporated by 294A0103(61) (OJ L 001 03.01.1994 p.418)

Incorporated by 294A0103(64) (OJ L 001 03.01.1994 p.446)

Amended by 394L0046 (OJ L 268 19.10.1994 p.15)

Amended by 395L0051 (OJ L 256 26.10.1995 p.49)

Amended by 396L0002 (OJ L 020 26.01.1996 p.59)

Amended by 396L0019 (OJ L 074 22.03.1996 p.13)

Amended by 399L0064 (OJ L 175 10.07.1999 p.39)

⁶⁹⁾ Joachim Scherer(ed), Telecommunications Laws In Europe *at* 2-18(BAKER & McKENZIE, 1995).

⁷⁰⁾ Towards a Dynamic European Economy, Green Pape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equipment COM(87)290.

⁷¹⁾ Joachim Scherer(ed), op.cit., pp.5-23.

⁷²⁾ Commission Directive 90/388/EEC of 28 June 1990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J L 192 24.07.1990 p.10.

⁷³⁾ Council Directive 90/387/EEC of 28 June 1990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pen network provision OJ L 192 24.07.1990 p.1, Incorporated by 294A0103(61) (OJ L 001 03.01.1994 p.418). Amended by 397L0051 (OJ L 295 29.10.1997 p.23).

범으로 유럽 통신시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공동규제 환경 및 조화기준을 통하여 유럽단일시장을 창설하는 일련의 조건들을 정하고 있었다.

"Service directive"는 회원국들이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특별하고 배 타적인 권리들을 없애고,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 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음성 서비스는 예외를 두어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1990년 이래 위원회는 이 "Service directive"를 수정하 기 위한 다양한 고시들을 채택했다. 자유화를 위한 Timetables은 음성 통신을 제외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배타적, 특별한 권리들 은 1996년 7월 1일 까지 제거되도록 계획되었다. 반면 음성통신서비 스에 대해서는 1998년 1월 1일 까지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74)

위원회의 ONP고시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신회사의 기초설비와 네트워크안의 현존 공공 네트워크를 경쟁자에게 개방하도록 요구하였고 모든 새로운 진입자에게 동일한 경쟁조건을 허용 하도록 요구하였다. 특히 통신망에 대한 높은 초기자본투자 요구가 새로운 진입자를 막을 것이기 때문에 현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한은 오직 공공필수목적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즉 접근제한이 허용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네트워크작동의 보안, 네트워크 안정의 유지, Data보호 상호작용 유지 등이 규정되었고 이것의 정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75)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제한을 두는 접근조건에 대해 ONP고시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들은 공동체 법에 따라 1)객관적 기준에 기초할 것 2)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표될 것 3) 그것들은 접근에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하여야 한다.76) 1990년에는 "ONP Framework Directive" 채택하여 기술적 인터페이스, 요금산정 원

⁷⁴⁾ Commission Directive 96/19 of 13 March 1996 *amending* Directive 90/388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full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markets, 1996 O.J. (L 74).

^{75) 90/388} art 2. C6.

^{76) 90/388} art 3. C1.

칙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기본적 접속규칙을 정하였으며, 이후 이를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다.

한편, 1995년 10월에는 EU 전역에 걸쳐 Catv망 이용에 부과된 제약을 폐지하는 고시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특히 1996년 1월 1일까지 EU 전역에서 Catv망을 통한 새로운 멀티미디어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77) 그외 이동 네트워크간 모든 제한 철폐·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기반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제3자가 이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Mobile Communications⁷⁸⁾과 위성서비스 및 터미널 자유화에 관한 고시79) 등이 있다.80)

2. 독일 통신법의 개혁과 1996년 통신법의 성립

(1) 통신망의 개방

서비스 제공자와 규제자가 법적으로 항상 분리되어 있던 미국과 달리 국영기관이 통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와 규제자로서의 역할 모두를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도 통신 서비스는 초기에 우편전보전화국이 그 공급책임을 맡고 있었다. 특히 독일 기본법 제87(f)조는 공공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전화 서비스 공급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무를 연방에게 부여하고 있었다.81) 따라서 전화서비스 자체를 국가기관이 아닌 사영화된 기업이수행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본법 자체의 수정을 요구했다. 1994년의

^{77) 95/51/}EC 1995. 10. 18.(CATV 자유로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CATV망 사용 자유 화의 고시).

^{78) 96/2/}EC 1996. 1. 16.

^{79) 94/46/}EC 1994. 10. 13.

⁸⁰⁾ 그외 1997년 4월에는 면허조건의 비차별성 및 투명성, 개인면허 허가사항을 제시한 "Licensing Directives" 채택하였으며, 1997년 6월에는 Interconnection Directives 채택하여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SMP:Significant Market Power)에 대한 네트워크에접속의무와, 공정한 비용 계산시스템 등을 규정하고 있다.

⁸¹⁾ 독일기본법(Grundgesetz), Art 87(f).

기본법의 수정으로 현재 연방정부는 독일에서 적정한 통신서비스의 유지되도록 확보할 책임을 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 제공할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82)

1989년 독일 통신법제는 우선 두 가지 법제에서 발견된다. 통신장비에 관한 법(Gesetz über Fernmeldeanlagen)은 DBP(Deutsche Bundespost)를 통한 통신네트워크의 설치와 작동을 인가한다. 그리고 전보송신법 (Telegraphenwege Gesetz)은 그 시스템의 작동과 설립을 위한 우선권을 DBP에게 부여한다. 미국과 같이 통신시장 자유화는 장비제조와 판매에서 제일 먼저 시행됐다. 따라서 1989년에 DBP는 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 통신법의 개혁은 3단계로 진행됐다. 1989년에 우편개혁 I, 1994년 우편개혁 II, 1996년 TKG(Telecommunicationsgesetz)의 제정으로 마무리된 개혁Ⅲ으로 나누어진다.83)이와 같은 통신개혁에 대해서는 독일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일단 형성된 후 그정도와 범위는 EU 고시의 요건에 의해 지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84)

⁸²⁾ Artikel 87f [Verwaltung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¹⁾ Nach Maßgabe eines Bundesgesetzes,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gewährleistet der Bund im Bereich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flächendeckend angemessene und ausreichende Dienstleistungen.

⁽²⁾ Dienstleistungen im Sinne des Absatzes 1 werden als privatwirtschaftliche T\u00e4tigkeiten durch die aus dem Sonderverm\u00f6gen Deutsche Bundespost hervorgegangenen Unternehmen und durch andere private Anbieter erbracht. Hoheitsaufgaben im Bereich des Postwesens und der Telekommunikation werden in bundeseigener Verwaltung ausgef\u00fchrt.

⁽³⁾ Unbeschadet des Absatzes 2 Satz 2 führt der Bund in der Rechtsform einer bundesunmittelbaren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einzelne Aufgaben in bezug auf die aus dem Sondervermögen Deutsche Bundespost hervorgegangenen Unternehmen nach Maßgabe eines Bundesgesetzes aus.

⁸³⁾ Carl B. Kress, "Toward More Competitive Markets in Telecommunication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49 Fed. Comm. L.J. 551, 557-560(1997); Axel Spies and Jan F. Wrede, "THE NEW GERMAN TELECOMMUNICATIONS ACT", 4 Mich. Telecomm. Tech. L. Rev. 1, at 1-5 (1997 / 1998).

⁸⁴⁾ Kress, op.cit., at 560-566.

먼저 1989년 우편개혁(post reform) I 은 통신상품과 서비스의 사적시장 창출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85) 초안자는 그 산업에서 법적구조가 독점이 예외가 되고 경쟁이 일반 법칙이 되도록 법적 구조를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86) 그 법은 독일 통신시장의 구조에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이동 통신서비스와 같은 통신시장의몇몇 분야와 장비의 제조 판매 시장이 경쟁에 개방되었다. 두 번째로 DBP(Deutsche Bundespost)를 세 개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우편서비스,우체국 은행, 그리고 통신(Deutsche Telekom)분야로 나누고 각각의 독립적인 조직을 창설 했다. 세 번째, 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그 산업에 대한 감독기관을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그 통신서비스 제공은 Deutsche Telekom에 감독권한은 BMPT(Bundesministerium für Post und Telekommunikation)에 부여 하였다.

특히 우편개혁 I 은 통신서비스를 독점영역과 경쟁적영역으로 양분하는 법적구조를 창출했는데, 전화 서비스와 네트워크기능은 전적으로 Deutsche Telekom의 독점영역으로 규제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반면다른 통신서비스로서 이동통신과 회사 네트워크, Switching장비 제조판매, 위성통신은 경쟁에 개방되었다. Deutsche Telekom은 독점분야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경쟁분야에서도 활동 할 수 있었기 때문에각 분야에서의 이익이 독립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즉 Deutsche Telekom이 독점적 지위에 의한 이익을 경쟁분야에서의 영업활동보조를 위해 사용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이것은 그의 경쟁자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와 경쟁자를 축출할 위험성을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상호보조를 막기 위해 법은 Deutsche Telekom의 다양한 자회사와 그것들의 수익을 분리하도록 요구하였다.

⁸⁵⁾ Gesetz zur Neustrukturierung des Post- und Fernmeldewesens und der Deutschen Bundespost(PostStruktG), v. 8.6.1989 (BGBl. I S.1026) (F.R.G.).

⁸⁶⁾ Scherer(ed), Telecommunications Laws In Europe, at 2-18(BAKER & McKENZIE,1995).

1994년 우편개혁Ⅱ의 목적은 분리된 전 DBP의 3개 기관을 사기업으로 전환하여 경쟁을 위한 준비단계로 착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독일 연방헌법을 수정하여 새로운 사영 Telekom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Deutsche Telekom은 Deutsche Telekom AG(Telekom)로 전환 되었다.87)

개혁 Ⅱ는 역시 BPT(Bundesanstalt fhr Post und Telekommunikation)를 설립했고, 이 기관은 사영화된 기업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 지를 감독하는 권한을 계속 행사하였다.88) 1995년 1월 1일의 DBP의 통신부분이 사영기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감독기관인 BMPT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주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편개혁 Ⅱ는 기본적인 전화서비스에 대한 Telekom의 독점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은 자유화 없는 사영화로 불리워지고 있다.89)

우편개혁 Ⅲ은 1996년 TKG(Telecommunikationsgesetz) 제정으로 완성되게 되는데, 유럽이사회의 Timetable에 맞춰 TKG는 1998년 1월 1일을 사적경쟁을 위한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완전한 개방 일자로설정했다. 이로서 통신시장의 모든 부분에서 독점의 유지를 위한 진입장벽은 철폐되었다.

1996년 TKG성립으로 기존의 BMPT 대신에 EC고시에서 지정했던 National Regulatory Agency(NRA)로 Regulierungsbehorde für Telekommunikation und Post(RegTP)를 성립시켰고 이 기관은 연방경제부안에 소속되게 되었다.90) 동법에 의해 설립된 RegTP는 의사결정으로 허가 보유

⁸⁷⁾ Art. 3 PTNeuOG, Gesetz zur Umwandlung der Unternehmen der Deutschen Bundespost in die Rechtsform der Aktiengesellschaft [Law on Converting the Businesses of the German Federal Postal System to Joint Stock Companies] (Postumwandlungsgesetz: PostUmwG).

⁸⁸⁾ Gesetz über das Postwesen (BAPostG) § 1 v. 3.7.1989 (BGBl. I S.1449).

⁸⁹⁾ Axel Kammholz, Bundeskartelamt, Das Bundeskartelamt als Regulierer?, in Vortrag im Rahmen der Euroforum-Konferenz: Telecommarkt Deutschland vor der Lizenzvergabe § 12, p. 18 (Feb.1996).

⁹⁰⁾ Telekommunikationsgesetz (TKG) § 66, v. 1.8.1996 (BGBl. I S.1120).

자들의 특정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허가권의 분배, Universal Service의 부과, 요금규제, 개방 네트워크조항과 Interconnection, 주파수분배의 역할을 한다.91) 이에 대한 결정에는 관련 당사자들이 참가하여 진술 할 수 있다.

RegTP는 독점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동법 제32조에 의한 독점통신사업자의 합병제한 등 TKG법안의 여러 영역에서 연방카르텔청의업무와 중복이 되는데, 양기관의 상호 반대되는 결정을 막기 위해TKG는 상호 협력의 정도를 명령하고 있었다.92) 예를 들어 면허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RegTP는 면허부여 결정을 할 때 카르텔청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또 RegTP가 요금규제나 개방네트워크규정,상호연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혹은 이러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면허에 부가조항을 다는 경우 RegTP는 연방카르텔청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양기관은 경쟁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TKG의 해석에일관성을 가지도록 상호협력을 명령 받고 있었다.93)

그러나 이러한 점은 96년의 TKG의 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RegTP와 카르텔 관청의 결정이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양자규제체제를 설정했다는 것이 문제되었다. 즉, 통신시장이 점차 "일반적인"사기업의 업무영역이 됨에 따라 일반적인 경쟁법 관청에 반대되는 통신규제기구에 특별한 경쟁법의 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점점 더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독일내부에서 강하게 주장되었다.%)

⁹¹⁾ TKG § 73(1).

⁹²⁾ *Id.* § 82. The Bundesrat found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the NRA and Cartel Office to be wasteful and pointless. Bundesrat Opinion, supra note 76, § 2. It sought to eliminate this problem by taking all market dominance questions out of the hands of the NRA and putting them in the hands of the appropriate federal or state cartel authorities.

⁹³⁾ Id. §82.

⁹⁴⁾ Kress, op.cit., at 573-574.

(2) 1996년 역무분류에 의한 허가제도 및 요금규제

1) 당시의 시장상황

언급한 바대로 EU시장 자유화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1994년 독일연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 Deutsche Telelkom(이하 DT)은 주식회사로 변환된 시기를 전후하여 통신 시장 일부 부문에서의 개방은불가피하게 되었고, 1990년대 단말기기 자유화, 데이터 통신의 VAN 영역과 위성통신 및 이동통신 분야의 서비스 자유화가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이동통신 분야에 Mannesman Mobilfunk, E Plus Mobilfunk 등의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 통신시장은 음성전화부터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음성전화는 1997년 12월까지 독점사업자인 DT의 지위가유지되었다. 그러나 EU는 1995년 11월 DT, France Telecom(이하 FT) 및양국 통신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DT와 FT의 공동프로젝트인 Atras의 인가조건으로 양국에서 1996년 7월부터 민간 망사업자나 전력회사가 DT와 경쟁할 수 있는 대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U내에서 이미 자유화 되어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즉 CATV나 이동통신등의 사업자는 1996년부터 독일 철도나 RWE 등 전력회사가 사내 테이터 전송에 이용하고 있는 대체 설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 이후 제한적으로 자유화가 진행되어온 독일 통신 시장은 1996년 대체 인프라 자유화를 계기로, 현재 1998년 완전 자유 화에 대비하여 DT와 경쟁할 사업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

당시 유럽 최대의 통신 사업자였던 DT는 1994년 7월 독일 연방기 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5년 1월에 주식회사로 체제 개편되었다. 주 식회사로 변환되면서 해외 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DT는 FT와 공동으로 Sprint에 대한 출자 및 Global One 설립을 비롯하여 동·서 유럽, 구소련 및 아시아 지역의 통신시장에 적극적으로 출자하였다.

1996년 당시 DT는 독일의 모든 전기통신시설기반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이동통신, 데이터 교환 서비스, ISDN 및 위성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즈음에 DT는 통신망의 근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전의 낡은 통신망을 교체하고, 1995년 말에는 베를린 등에 700만 신규회선을 가설하였다. 또한 300만 회선에 가까운 가입자수를 가진 ISDN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다.이와 함께 DT는 독일 CATV망을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차 멀티미디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1995년 이해 이미 CATV의 디지털화를 위한 프로젝트를베를린 등지에서 진행하였으며, 디지털 유료 TV디코더의 개발에 관한회사를 설립하였다.

한편 독일 통신시장은 유럽 최대의 시장으로서, 이 시장을 둘러싸고 국내 및 해외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다. 1988 년 자유화 조치 이후에는 기본음성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DT에 이은 제2위 사업자가 되기 위 해 통신 사업자들은 노력했다. 제2위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들간의 노 력은 독일 기업과 해외 통신사업자들간의 활발한 제휴로도 나타났다. 외국의 BT, AT&T 및 C&W 등이 독일 사업자들과의 제휴 관계 속에 서 독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Mannesman Mobilfunk에 출자하는 Mannesman과 E Plus에 출자하는 에너지 사업자 Veba는 통신관련 합작회사 Vebacom, C&W Europe의 설립으로 C&W와 각각 제휴하고 있었다. 또한 Mannesman은 1996년 7월 총연장 4만 킬로미터의 자영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독일철도(DB)의 자회사인 DBKom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화학과 에너지 부문의 사업자

인 Viag은 BT와 공동출자로 ViagInterKom을 설립했다. 그리고 Viag과 BT는 1996년 1월에 전력사업자인 RWE와 제휴하였다. 한편 철강회사 Thyssen은 미국의 BellSouth와 제휴했다.

| 기업명 | 모회사 | 제휴·자회사 | 광통신랑/사업내용 | 해외제휴 기업 |
|------------|--------------|------------------------|-------------|------------|
| | Veba AC | Proussen Elektra | 3,500km | C&W(15%) |
| | | Deutsche Bahn | 3,900km | AT&T |
| | | Wintershall Gas | 1,200km | |
| Mannesmann | | Iridum Inc.(10%) | 이동 위성 | |
| Vebacom | | Teleport Eurp. (49.8%) | VSAT | |
| | | LION(65%) | 소프트웨어 시스템 | |
| | Mannesmann | CNI | 30,000km | - |
| | Burokom | E-Plus(28.4%) | PCN | |
| | | VEGA(East G) | 19,000km | |
| RWE-Viag | RWE AC | VEW | | |
| AWE-YAR | | Talkline | DECT 시험 | |
| | Viag AG | | | BT, MCI |
| Thyssen | | E-Plus(28,4%) | PCN | |
| | | MA2GmbH | group voice | Bell South |
| | | XTEND | VANS | |
| DBKom | Deutche Bahn | | 40,000km | |
| | (독일정도) | Mannessmann (49.8%) | 통신망 인프라스트럭쳐 | |
| | (4847) | | 도매 | |

<그림 1> 국내외 사업자 제휴 현황(출처: 노무라연구소, 일미유럽의 주요통 신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1996을 재인용)

또한 1980년대 중반 당시 유럽에서는 CATV 도입 검토가 각국에서 이루어졌다. 독일에서는 민간 방송국의 개설 면허를 각 주에 위임하여 여러 개의 채널이 생겨났다. 그로부터 10년 후 CATV는 이러한 지역 방송과 외국 방송을 포함하여 약 30개의 채널로 송출되고 있었다. 또한 각 부별로 주문형 비디오(VoD) 등 멀티미디어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독자적인 시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에 힙입어 CATV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전기통신 서비스로 성장하게 되었다. 전체세대의 약 65%가 공공 및 민간 CATV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CATV의 동축케이블 등 시설은 DT가 제공하고 있었다. DT의 이러한 CATV 관련 시설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는 후에 전화서비스 자유화와 멀티미디어 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당시 DT와 통신시장의 신규참여자들은 멀티미디어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Veba의 Info-city NRW 프로젝트로서, 라인 루르 지역에 광통신을 이용해서 주문형 비디오, 유료TV, 원격 학습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DT도 자회사인 DeTeBerkom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여 원격의료를 비롯한 많은 사업 방안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DT는 1994년 2월 미디어 부문의 Bertelsmann 콘체른, Kirch 그룹, 독일 제2의 국영TV사인 ZDF와 공동으로 유료TV자회사인 Media Service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이라는 이유로 정부나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 1996년 통신법의 주요 내용

가. 개 관

1996년 7월 5일 독일 통신법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1995년 3월 법안이 제정된 이후 11월에 연방정부와 야당이 합의를 한 후, 1996년 1월 각의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EU 차원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1998년 이후의 규제 구조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신정책 이념을 규제완화와 개방이라는 물결 속에서 어떻게 유지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통신법 속에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신제도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6년 통신법 제정으로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나. 역무분류 및 면허제도

(가) 개 관

충분한 주파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면허를 부여한다.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공중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온 전송회선 운영자와 자가 전기통신망을 기반으로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속한다.

면허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송회선의 운영에 대한 면허와 자가 통신 망을 사용하는 음성전화 서비스 면허가 있으면 제1종에서 제4종까지로 구분된다. 먼저 전송회선의 운영에 관한 면허로는 면허취득자 또는 타인이 제공하는 공중 이동무선서비스(제1종 면허: 이동무선면허), 면허취득자 또는 타인이 제공하는 공중 위성서비스(제2종 면허: 위성면허), 면허취득자 또는 타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1종 및 제2종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공중 전기통신서비스(제3종 면허)가 있다. 그리고자가 통신망을 사용하는 음성전화통신 면허(제4종 면허)가 있다. 이면허에는 전송회선의 운영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자에 의해 사용되는 전송회선의 운영은 공중용 전기통신서비스로 간주하며, 규제기관은 요청이 있으면 제1종에서 제4종까지의 면허를 하나의 복합면허로 부여할 수 있다.

| 대 구 분 | | 소 구 분 | |
|---------|-----|--------------------------------------|--|
| | 제1종 | 무선이동면허 | |
| 전송회선 운영 | 제2종 | 위성면허 | |
| | 제3종 | 제1종 및 제2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중통신서비스 | |
| 기타 | 제4종 | 자가망으로 제공되는 음성전화 면허 전송선로의 운영권한은 없음 | |

<표 1> 독일 통신법 면허 규정

(나) 면허절차와 부여과정

가) 면허절차

서면으로 면허 신청을 접수하면 규제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서면으로 면허를 부여한다. 면허장에는 면허 종목의 업무가 행해질 지역을 지정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면허 신청이 있은 후 6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는 통신법상의 규제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 목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면허 부여 이후에도 면허에 추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추가조건을 요하는 전제조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면허취득자의 신청에 의해 이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면허 신청이 거절된다.

- ① 무선회선을 운영하려는 신청인에게 할당할 수 있는 가용 주파수 를 규제기관이 보유하지 않을 경우
- ② 사실상 다음의 내용이 추정되는 경우
 - · 신청인이 면허권을 행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신뢰성, 능력 및 전 문지식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 면허를 지속적으로 행사하지 못하 는 경우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공중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

한편 가용 주파수의 희소성을 감안하여 면허기간의 제한이 편의상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나) 면허취득자의 변경

면허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며, 규제기관의 서면 허가를 요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면허 양도나 면허 소유자의 변경 또는 면허의 사용에 대한 허가는 지체 없이 규제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 면허수의 제한 및 이에 따른 면허 부여 절차

전기통신시장의 면허 수는 주파수 사용계획에서 정한 면허 가능 주파수의 수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는 결정 전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되며, 결정된 사항은 규제기관이관보에 공표한다. 이처럼 면허의 수가 제한될 경우 규제기관은 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매(후술함)를 하거나 경쟁입찰(후술함)을 한다. 면허 부여 절차의 선택과 결정 사항 및 경매나 경쟁입찰 절차 실시 사항은 규제기관의 관보에 공표해야 한다.

전술한 통신법상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경매 절차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절차가 완료되면, 면허절차에따라 면허를 부여한다. 그러나 무선링크업(radio link up)을 위한 주파수는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해서만 면허가 부여될 수 있다. 만일 면허대상이 되는 제품과 지리적 시장에 대해 경매나 경쟁입찰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관련 사업자는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경매의 목표는 공중에 대한 해당 전기통신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주어지는 주파수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결정 하는 데에 있다. 경매 전에 규제기관은 다음의 사항들을 확정해야 한다.

- 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참가자가 입증해야 할 최소 한도의 전문 기술력과 자격 요건
- ② 주파수 사용계획에 준하여 경매에서 구매한 무선주파수를 사용 하게 될 제품과 지리적 시장
- ③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유효 시청범위의 정도와 이를 달성키 위해 소요되는 시간, 준수해야 할 장래의 면허 주파수 사용조건을 포함하는 면허조건
- ④ 기본적인 수량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경매 참가자가 구매해야 할 무선주파수의 기본 수

규제기관은 경매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같은 기준은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비차별적이고, 중소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규제기관은 최소 입찰가액을 정할 수있다. 만일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경매 형태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면허를 부여한다.

경쟁입찰의 목표는 입증된 기술과 자질을 기반으로 공중을 위한 해당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자의 수요를 어느 사업자가 잘 충족시킬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에 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규제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 ①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응찰자의 최소한도의 전문 자격 요건
- ② 면허 대상이 되는 제품과 지리적 시장
- ③ 주파수 사용과 관련한 유효 시청범위의 정도와 이를 달성키 위해 소요되는 시간, 준수해야 할 장래의 면허 주파수 사용조건을 포함하는 면허조건
- ④ 응찰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

이 기준에는 응찰자의 전문지식과 능력, 경쟁입찰에 제출되는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및 해당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면허 대상 전기통신 서비 스에 대해 높은 유효 시청범위를 보장하는 응찰자가 선호된다.

경매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은 경쟁입찰에서도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비차별이고 구체적인 경쟁입찰 기준을 정해야 한다. 경 쟁입찰 결과 여러 응찰자가 동점을 얻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접속의 무선링크업에 있어서 주파수가 할당되었을 경우 규제기관은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조건으로 일정기간 내에 특정 주민에게 ISDN 부대서비스가 있는 음성전화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허 지역 내에서 긴금 통화시설의 이용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 요금규제 및 기타 규제

(가) 요금규제

요금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비용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요금에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전기통신시장에서 경쟁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지배적지위의 결과로 나타난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시장에서 타회사의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할인액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통신시장 내에서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다른 이용자와 비교하여 어떤 개인에게 특정한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종 및 제4종 면허에 의해, 전송회선과 음성전화통신의 제공에 대한 요금 및 일반조건 중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면허취득자가 당해 시장 내에서 경쟁제한방지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해, 규제기관의 승인 대상이 된다.

규제기관이 요금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별 효율적 서비스 제공의 비용과 결합상품의 평균요금 변화를 규정한 기준에 따라요금승인을 해야 한다.

(나) 규제기관

통신법상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전기통신 및 우편 규제기관은 연방경제부의 업무범위 안에 연방기관으로 설치한다. 기관의 장과 2인의부기관장은 연방정부가 자문위원회의 추전을 받아 지명한다. 연방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가 4주 이내에 추전하지 않을 경우지명권은 종료된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추전을 연방정부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는 4주 이내에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독일 하원의원 9인과 연방의회 의원 9인으로 구성된다. 모든 자문위원들과 그 대리인들은 독일 하원이나 연방의회의 추천에 의해 연방정부가 임명한다. 하원이 추천한 위원들은 하원의 입법기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입법기간이 끝나면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며 연임도 가능하다. 연방의회가 추천한 위원들은 4년간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며 연임도 가능하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제기관의 장과 부기관장을 연방정부에 추천한다.
- ② 규제기관의 심판결정에 관여한다.
- ③ 규제 목적을 이행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 ④ 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취득할 권한이 있다.
- ⑤ 규제기관의 활동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 ⑥ 주파수 사용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 고객 데이터의 제공

공중을 위해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취득자는 공중을 위해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는 면허취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조회서비스의 개시와 전화번호부의 발간을 위해 관련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고객이 이용하기 적절한 형태로 고객의 데이터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공중을 위해 음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취득자는 모든 제3자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데이터 보호규정을 준 수하면서 조회서비스의 개시와 전화번호부 발간용으로 적절한 수수료 를 받고 고객이 이용하기 적절한 형태로 고객의 데이터를 알려줄 것 을 약속해야 한다.

(라) 기업 구조 분리와 회계 분리

전기통신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경쟁제한방지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를 통해서 전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면허를 취득한 부분에서의 전기통신 서비스간에,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부문에서의 사업과 전기통신 서비스간에 분리된 회계 시스템을 설정함으로써 재무관계에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기관은 면허 대상의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내부 회계구조를 규정할 수 있다.

라. 망개방 규정 및 상호접속

국가운영 독점사업에서 최근까지 독일은 국가간 장거리통신의 연결이외에는 상호연결의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이동통신, ISDN, 다른 새로운 기술이 Telekom의 경쟁자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상호연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TKG는 "상호연결"을 물리적, 논리적인통신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른 통신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화하는 네트워크의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다.95 또 통신망상의 모든 네트워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연결 될 수 있도록 Part IV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상호연결의 의무 규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상호연결의무 자체가 대상사업자에게 많은 제한을 가져오기때문이다.

특히,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통신사업 운영자는 그 설비가 경쟁자에게 필수적인 한, 그에게 자신의 네트워크를 개방

⁹⁵⁾ TKG § 3(24).

하고, 상호연결 해주어야 할 의무 등이 있다.%) 상호연결에 대한 계약은 객관적으로 통신네트워크에 대한 동일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EU의 개방네트워크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97) 이에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었다.98) 네트워크 운영자는 EU고시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상호연결을 제한 할 수 있을 뿐이었다.99) 만일 상호연결에 있어 다른 자 보다 자기 자신이 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도록 설정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추정된다.100) 이것에 대한 예외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인 경우에만 받아 들어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동법 36조에서는 공중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른 서비스업자에게 상호연결을 요구할 수 있고, 각각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공에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간에 상호연결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감독기관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후 다른 일방당사자의 요구가 있은지 6주안에 상호연결을 명령할 수있다.101) 다만 이것은 당사자들간의 상호협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정되고, 그 이후라도 당사자들간의 상호협정은 유효하였다.102)

상호연결계약의 사본은 RegTP에 보내져야 하고 당사자간에 상호연결약정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 RegTP가 기술적, 운영적 경제적 조건을 설정한다.103) 특히 사업자가 상호연결규정에 위반한 경우 RegTP

⁹⁶⁾ *Id.* § 33(1).

⁹⁷⁾ Id. § 35. § 38(1).

⁹⁸⁾ Id. § 33(2).

⁹⁹⁾ Id. §35(2); ONP EG Nr. L 192, S.1 (art. 3, sentence 2).

¹⁰⁰⁾ TKG § 33(2).

¹⁰¹⁾ Id. § 37(1).

¹⁰²⁾ Id. § 37(2).

¹⁰³⁾ Id. § 37.

는 행위 중단과 문제된 행위의 금지명령, 관련계약의 전부 혹은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한도에서 부분적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104)이러한 권한은 경쟁법에 규정된 것과 비유될 수 있으나 단순히 요건을 따르도록 하는 것보다 행위를 직접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자회사 매각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105)시장지배적 사업자가 EU의 ONP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106)

모든 통신사업자가 DT와 상호접속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상호접속 요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DT는 1996년 당시 인구 2십만 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전국 40군데의 중계교환국을 상호접속용으로 개방하고 있지만, 시내교환국 개방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접속료와 관련하여, DT는 스스로 상호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실제비용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신규사업자들은 1998년 기본통신시장 자유화 이전에 DT와의 상호접속 조건을 확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그러나 접속료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통신법 및 다른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

3. 현행 2004년 통신법상 사업자/역무분류

(1) 2004년 통신법 개정의 과정과 목적

2004년 6월 26일 독일 통신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통신법 개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논쟁이 있어서 여름 휴지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될지가 의문이었지만, 연방참의원(상원)과 연방의회(하원)의 조정협의회에서 예상치 않게 빨리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의 개정

¹⁰⁴⁾ Id. § 33(2).

¹⁰⁵⁾ TKG Begründung, Report, op.cit., § 32(2).

¹⁰⁶⁾ Id. § 34(3).

통신법은 조화로운 통신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신망과 통신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EU법체계'에 따라 수정되었다. 개정 통신법에 포함된 새로운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통신법의 목적은 특히 일반 경쟁법으로의 접근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면허의무가 폐지되었다. 통신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더 이상 기존의 허가를 요하지 않게 함으로써, 시장진입을 보다 쉽게 한 것이다. 따라서 개정 통신법 하에서는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자들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당국인 통신·우편 규제기관(RegTP)은 이제부터는 사후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독일 통신법 제126조에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조치와 강제이행금(Zwangsgeldern)으로부터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금지명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2) 주요 개정 내용

1) 개 관

개정 통신법의 핵심영역은 이른바 시장 규제(Marktregulierung)이다. 이는 현재 당해 시장에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장기간 유효 경쟁이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경쟁법의 적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장규제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이제까지 RegTP의 심결부에서 해왔다.

시장규제에는 시장에 대한 정의와 시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시장의 획정 및 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지배력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의 정의와 시장 분석 절차를 시도함에 있어서, RegTP는 이해관계 있는 기관들, 즉 다른 EU회원국의 규제당국들과 EU위원회에 자기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자문 및 확인 절차). EU회원국의 규제당국들과 EU위원회가 입장을 피력하면, RegTP는 이를 포

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제는 EU위원회가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 배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된 통신시장에서 의미있는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효과는 이제부터는 법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조정권한을 통해 발생된다. RegTP는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 차별 금지(제19조)
- · 투명 의무(제20조)
- · 접속 의무(제21조)
- · 회계분리의무(제24조)
- ·접속요금 규제(제30조)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요금 규제(제39조)
- ·사업자 선택 또는 사전선택(제40조)
- ・망제공(제41조)
 - 2) 사업자/역무분류 체계의 변화

총체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독일의 개정 통신법은 시장에 신뢰성 있고 유연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여기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가자들을 조정하는 TegTP의 임무는 나아가 RegTP를 위한 도전이기도 하다. RegTP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기술중립적 규제를 통해서 통신 영역에서 공정하고 기회 균등한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자의 분류 또는 역무 분류와 관련해서는, 1996년 통신법에서는 전송회선 운영 여부 및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기준으로 제1종 제4종으로 구분하는 면허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2004년 통신법에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분류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대신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중 통신망 사업을 하거나 공중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의 개시, 변경 및 종료와 회사 형태의 변경시에 반드시 규제기관 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 신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시에는 사업자가 자신을 확인시킬 수 있는 증명, 특 히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 업 개시일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된 신고 를 받은 규제기관은 1주일 이내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Bescheinigung) 해 주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통상 신고된 사업자의 명부를 공표한다.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제공업자나 망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1996년 통신법의 면허제에서 2004년 통신법의 신고제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면허제 당시에는 규제기관이 일정한 경우 면허를 거절하 거나 취소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행 통신법상에서는 사업활동의 개시, 변경 및 종료시에 규제기관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므로 규제상 황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요금규제 규제를 비롯한 행정규제의 변화

가. 요금규제

요금 규제에 있어서 이제부터 RegTP는 요금규제 조치를 하는 경우이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함에 유념해야 한다(안정성의 제공). 요금 규정의 주요한 적용부문은 접속 영역이므로, 이 경우요금 규정과 접속 규정은 하나의 규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요금규제가 사전 인가제라면, 그 요금은 효율적인 제공 비용을 넘어서는 안된다. 만일 사후 규제라면, 요금 합의에 있어서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사후적으로 조사하면 된다. 이 경우 남용의 징표는

예시를 통해 구체화된다(덤핑, 비용대비 부당한 가격, 사실상 정당하지 않은 결합판매).

사전인가제는 원칙적으로 RegTP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부과한 접속 제공에 있어서 요구된다. 해당 사업자가 비동시적으로 그가 활동하는 소매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이중 시장지배력) 접속의무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사후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RegTP에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접속요금은 사후적으로 규제될 것이다. 요금의 사후규제는 결국 시장지배력 없는 사업자의 접속요금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시장지배력이란 최종이용자에 대한 접속을 통제하는 시장지배력을 의미한다.

최종 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규제는 앞으로는 접속부문이나 사업자 선택 또는 사전선택제에 있어서의 의무부과로 규제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사전적 요금인가제는 최종이용자 시장을 제한하고 장래에도 계속 경쟁지향적인 시장을 형 성시키지 못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소매시장에서의 요금변경을 꾀하는 경우, 경쟁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도매시장에서의 핸디캡 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핸디캡으로는 특히 요금남용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를 통하여 경쟁자는 지체 없이 시장지배 적 사업자에 비교될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될 것 이다.

특별한 남용 감독은 일반조항과 추정요건의 편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그밖에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규정하였다. 과책 있는 남용행위에 대한 RegTP의 처벌권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제 RegTP는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게 적정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주파수 규제

주파수 이용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RegTP의 사전 분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주파수 이용을 통하여 전파기술적 장애의 위험이 배제될 수없거나 또는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당연히 주파수는 각각 할당되어야 한다. 통상 공개적인 일반주파수 분배가 행해진다. 드물게 주파수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해진절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예전과 같이 원칙적으로 공모절차보다는 경매절차에 의한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가 자신이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로 생겼다. 이와 함께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파수를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규정됐다. 그러나 주파수가 종래 통신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 또는 할당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령 IMT 2000(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UMTS)/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 면허의 거래도 배제된다.

다. 번호부여

번호부여에 있어서는 RegTP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RegTP는 이제부터 dailer들의 기초적인 예외사례들을 작성해서 제공할 수 있다. 식별번호의 위법적인 이용을 막기 위해, RegTP 등은 번호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여된 번호의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 이 권한은 일반적인 것이며 더 이상 특정 번호대만에 대한 권한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라. 정보보호 등

개정 통신법 제7장(통신비밀, 데이터 보호 및 공공의 안전)에서 매우 현저한 것은 통신데이터보호령상의 내용이 통신법으로 편입되었다

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보호권의 행사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 게 하였다.

광고 목적으로 고객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는 그가 계약 체결시 획득한 고객데이터를 장래에도 고객에 대한 조언이나 광고를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고객이 허락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광고목적으로 전단지를 우송하기 위해 고객과 관련된 전화번호 및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자신의 데이터를 그처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철회권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통화내역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 종래에는 통상 고객의 전화번호는 모두 뒤의 3자리가생략된 채 저장되었으나, 이제는 개정 통신법에 따라 생략하지 않고저장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이로써 청구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전화번호 모두가 기재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고객은 앞으로도 전화번호의 마지막 세 자리를 생략한 채 저장하거나 계산서를 발송함에 있어서 자신의 통화 내역 데이터를 아예 기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선택한 개별 통화내역 증명서는 변함이 없다.

전화정보에 있어서는 이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른바 역검색이 가능해진다. 즉,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그 전화번호사용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고객은 자신의 데이터를 전화번호부나 공개된 전자적 고객인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이러한 이용에 대해 이의가 없어야 한다. 한편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항변권이 고객에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

공공의 안전에 관한 절에서는 긴급통신에 관한 조항들이 새로이 포함되었다(제108조). 이 조항들에서는 망보유자에게 긴급통신 발신지에 관한 데이터를 넘겨줄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긴급 상황인 경우이동통신 가입자의 소재지 추적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개정 통신법 제111조에서는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던 서비스제공자의 고객데이터 수집에 관한 의무를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계약체결에 있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입법절차에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카르텔법적 수단이 고려되었지만, 일단은 행정법적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기로 했다. 이는 RegTP의 심결 이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앞으로는 2심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과 규정에서는 옛 통신법에 의거한 RegTP의 심결들, 가령 상호접속명령이나 요금인가 등, 이 심결들이 개정 통신법에 의거한 새로운심결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

4) 네트워크 개방 및 상호접속

접속 부문에 있어서는 RegTP의 조정 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의미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광대역망 접속이나 특히 비트스트림 접속에 관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의미있는 시장지배적 망보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 중에는 단일한 견적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최초로 법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통신이용자보호령(TKV) 제4조상 재판매 규정은 접속 의무조항으로 수용되었다. 2008년 6월 30일까지 의미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단지 번들(gebündelt) 재판매 의무만을 진다. 즉, 계속 영업을 하는 한 접속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RegTP는 언번들(entbündelt) 재판매도 허용할 수 있다.

제 3 절 일 본

1. 1985년의 통신시장 개혁

(1) 민영화의 추진

일본은 1874년에 일본제국통신조례를 시행하여 통신사업부문을 정부에서 관장해 오다가, 1885년에 체신부를 설치하여 통신사업과 우정사업을 모두 운영토록 하였다. 그리고 1949년에는 체신부를 폐지하고 우정사업의 전담부서와 전기통신사업의 주무부서를 분리하여, 우정사업은 우정성이 맡고,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성이 관할했다. 1952년에는 전기통신성을 폐지하고 일본전신전화공사를 발족시켜 전기통신사업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85년에는 전신전화공사를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민영화를 추진했다.

| 운영형태 | 시기 | 사업기관 | 주요사업내용 |
|------|-----------|------------|---------------------------------|
| 정부기업 | | 체신성 | 전신사업 전기통신, 우정사업 전기통신사업 전담 |
| 공 사 | 1952-1985 | 일본전신전화공사 | 전기통신사업 전담 |
| 민 영 | 1985 이후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 전기통신사업 |

<표 2> 일본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 과정
* 출처: 영국 및 일본의 전기통신사업 민영화 사례연구, 통신정책연구소.

정부기업에서 공사체제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전기통신정책의 목표 재정립을 위한 것이었다. 새로 설정된 정책목표는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정비 및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전기통신공사법 제1조). 이 시기에는 전화 외에는 전기통신시설이 없

었으므로,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란 전화의 적체해소와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체제에서 벗어나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 조직을 정비한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전신전화공사의 경영을 집중한결과, 1978년에 전화적체가 해소되고, 1979년에는 전국적인 자동즉시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정책 전환의 변수가 나타났다. 국내적으로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 등이 급격하게 발전·결합하여 전기통신부문이 단순히 사회기반구조로서 기본통신서비스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산업으로서의 위상변화에 따른 일반기업체들의 참여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통신서비스가 충족된 이후에 국민 개개인의정보통신서비스의 욕구와 기업의 수요가 더욱 다양화·고도화되어 기본통신서비스의 확충, 유지, 보수 관리에 주력해 온 전신전화공사 일변도의 체제에서 탈피하여 각 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제로의 변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은 일본시 장개방을 요구하였고, 1973년도 동경라운드 이후 미국 일본간의 쌍무 협정을 통해 시장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 상황에 대한 대응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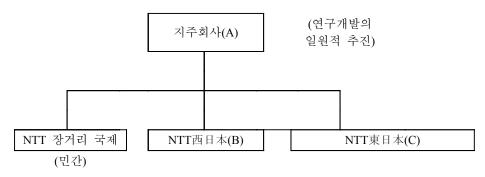
(2) 통신체제의 개방과 NTT의 분할

일본의 통신법제 개혁은 1985년 전전공사의 독점을 규정한 공중전기통신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NTT회사법, KDD회사법의 3법을 제정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이에 의해 NTT는 정부가 1/3의 주식을소유하는 주식회사로 민영화 되었다.107) 다만 NTT는 통신 서비스의

¹⁰⁷⁾ NTT는 1954년 Den Den Kosha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5년 민영화와 함께

전국적, 안정적 제공에 대한 의무를 지고 사업계획·임원임명의 인가 제 등 정부의 특별한 통제를 받게 된다. 그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시내전화를 포함한 경쟁 사업자의 참가가 인정되었고 신규 사업참여 자는 전국적, 일부구간만의 서비스제공을 선택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영화 초기 NTT는 데이터, 셀룰러, S/W 등의 부문이 차례로 자회사로 분리되어졌다. 예를 들면, 1988년에 Data Communications Headquarters는 NTT Data로, 1992년 셀룰러사업이 NTT DoCoMo로, 1997년 8월 Software Headquarters가 NTT Comware 등으로 NTT 자회사가 되었다. 우정성과 NTT는 1996년 12월 6일 분리분할(지주회사제의 채택을 포함한 9개항)에 합의하였다. 지주회사의 경영형태로 구조조정을 한NTT는 지주 회사를 주축으로 3개 회사로 분할 되게되었다. 1999년 7월에는 NTT 재편문제가 완결되어 장거리 및 국제통신을 담당하는 NTT Communications, 지역통신을 담당하는 동일본전신전화와 서일본전신전화가 설립되었다. 동서회사는 NTT법에 의한 특수회사이지만, NTT Communications는 특수민간기업으로 자본금 300억엔 규모의 NTT 전액출자로 출발하였다.



< 표 3> NTT분할 구조(정보통신부 1998 정기국회 보고자료에서 인용) 주 1) 지주회사는 NTT장거리·국제, NTT東日本, 西日本의 주식 100% 보유. 2) A, B, C는 특수회사임.

현재의 NTT로 개칭하였다.

1999년에 일본내부에는 KDD¹⁰⁸⁾, DDI¹⁰⁹⁾, TJC¹¹⁰⁾, JT¹¹¹⁾ 등의 1종 허가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NTT의 재편에 따라 이에 대항하기 위한 업체간의 합병이 증가하게 되었다.¹¹²⁾ 이러한 NTT분할의 과정을 보면 미국 AT&T의 분할과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이 있었다. 먼저 AT&T분할의 경우 AT&T의독점화 의사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장비부분의 업체를 전혀 가지지 않고 독점화 시도와는 거리가 있는 NTT를 동일하게 취급

¹⁰⁸⁾ Kokusai Denshin Denwa Kabushiki Kaisha:1953년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 국제통신사업자로 1997년 6월부터는 국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997 회계년도에 국제전화의 66%, 국제 전용회선의 70%를 점유하였다. KDD는 일본은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에서 텔레마케팅, 과금, 시스템통합 등의 사업을 하는 44개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1999년 정보통신부 정기국회보고자료).

¹⁰⁹⁾ 제2전전(DDI)은 1985년 장거리통신사업자로 설립되어 NTT에 이어 제2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NCC(New Common Carrier)의 하나로서, 1998 회계년도에 약 5,359억엔의 매출과 1,630만명의 가입자 회선을 구축하였다. 또한 1987년 Kansai Cellular Phone을 설립하여 셀룰러시장에도 진출하여, DDI Cellular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중인 8개의 셀룰러사업자를 거느리고 있다. DDI는 Mobile Communications Group, Engineering Group, Sales Group, International Group 등 4개의 사업그룹과 Administrative Group, 1997년 6월에 설립한 International Headquarters로 구성되어 있다(1999년 정보통신부 정기국회보고자료).

^{110) 1984}년 11월 설립되어 1985년 6월 제1종 통신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고 연차적으로 전용회선서비스, 장거리서비스, 지능망서비스 등을 도입하였다. 1995년 3월에는 전국적인 망을 완성하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 및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Toyota Mortor Corp., Mitsubishi Corp., Mitsui Corp., Sumitomo Corp., Itochu Corp., Marubeni Corp., Denso Corp., Japan Highway Service Assoc.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00년 정보통신부 정기국회보고자료)

¹¹¹⁾ 일본텔레콤(JT:Japan Telecom)은 1984년 통신시장에 진입하려는 철도회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동 사는 1986에 처음으로 전용회선서비스를, 1987년부터는 장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2년 11월에는 광섬유로 국내 디지털망을 완성한 최초의 NCC가 되었으며, 1991년 Digital Phone Group, 1994년 Digital Tu Ka Group의 설립으로 셀룰러 시장에 진출하였고, 1995년에는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사업자인 Astel Group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이어 1997년 10월에는 국제통신 사업자인 ITJ(Interna모두 제공하게 되었다(1999년 정보통신부 정기국회보고자료).

¹¹²⁾ 일본텔레콤은 지난 1997년말 국제전화사업자인 ITJ(International Telecom Japan) 를, 1998년 12월에는 KDD(Kokusai Denshin Denwa Kabushiki Kaisha)가 도요타 계열 의 텔레웨이와 합병한 바 있다. 제2전전(DDI) 또한 외자와의 제휴 및 일본이동통신 (IDO)과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1999년 정보통신부 정기국회보고자료).

해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113) 또한 미국의 전화망의 크기와 일본의 영토내의 전화망 크기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분할의 모범을 AT&T의 예에서 찾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114)

- (3) 1985년 법의 역무분류와 진입규제
- 1)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분류 및 진입조건

가. 사업자의 시장진입조건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은 통신망 소유 여하의 기준에 따라 규제 강도다 달라진다. 즉,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망의 보유에 의한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통신망의 임차에 의한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로 나뉘고,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특별제2종 사업자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일반 제2종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관해 상세한 것은 후술한다. 이 중 (구)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에서는 제1종 사업의 허가를 위한 기준을 두고 있다.

첫째, 그 사업을 확실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 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그 사업 계획이 확실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셋째, 그 사업의 개시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적절해야 한다.

¹¹³⁾ Richard E. Nohe, op.cit., p.309-310.

¹¹⁴⁾ Id.

| 구 | 별 | 정 의 | 사업의 개시 | 사업의 폐지 | 요금/서비스 |
|-------|-----|-----------------------------|--------|--------|--------|
| 1종사업자 | | 통신회선을 스스로 설치 | 허가 | 허가 | 인가 |
| 2 종 | 특 별 | 통신회선을 1종사업자로 부터 (대규모) 임차 | 등록 | 사후신고 | 사전신고 |
| 사업자 | | 통신회선을 1종사업자로 부터 (소규모) 임차 | 신고 | 사후신고 | 비규제 |

<표 4> 전기통신사업의 진입조건

전기통신서비스의 규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구분에 기초를 둔 방법이 채용되어 통신설비를 소유하는 사업자는 제1종사업자, 설비를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2종 사업자로 구분된다. 제1종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며 참여는 허가제, 서비스와 요금은 인가제이다. 이에 비해 제2종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참여는 신고제, 서비스와 요금은 무규제이다.

이와 같은 개혁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는 현재 공급기술의 다양성으로 인해 시장구조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즉 기존의 유선방식에 의존하던 네트워크구조는 통신위성, 무선, 마이크로웨이브, CATV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라는 기준으로 동일 네트워크로 동일한 방식만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구조를 획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급형태와 특성에 관계없이 통신설비의 보유유무에 따라 제1종과 2종으로 나누어 통신설비를 보유하는 자는 1종, 그렇지 않은 자는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115)

¹¹⁵⁾ 경쟁과 규제,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5), p.65-67.

나. 전기통신사업의 종류와 분류

전기통신사업의 종류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을 제1종 전기통신사업과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구분하며, 통신회선설비 보 유유무에 따라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 했다.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송로 및 교환기와 같은 전기통신회 선 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총무성의 허가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자는 장거리계·국제계, 지역계, 위성계, 이동계 등으로 나누어 행정지도를 통한 사업자수 조정을 해 왔다. 셀룰러와 PHS(Personal Handphone System) 등 이동계는 전국적 인 망사업자라는 이유로 고정망계 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했다.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설비를 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국제통신서비스 제공유무에 따라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한다.

| 구 분 | 제1종 사업자 | 제2종 사업자 | |
|----------------|--|--|------------|
| 1 L | 세1은 사원사 | 특별 제2종 | 일반 제2종 |
| | ① 자체적으로 통신회선 | 제1종의 제외한 사업자 | |
| 정 의 | 설비를 설치해 통신역무 를 제공 ② IRU에 의한 통신회선 설비 확보(1999년 12월 시행) | ① 모든 형태의 공전공 접속에 의해음성전송 서비스를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제공② 국제구간의 전용회선을 빌려 타인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 | 특별 제2종을 제외 |
| 진입방법 | 허 가 | 등 록 | 신 고 |
| 설비보유기준 | 통신망설비(회선+설비) | 통신설비 | 좌동 |

<표 5> 사업자 분류

- * IRU(Indefeasible Right of Use): 해지할 수 없는 장기이용권
- * 통신설비: 전송로 설비는 제외됨. 교환기, 서버, 게이트웨이 등 포함.
- * 출처: 이한영 외, 주요 국가간 통신서비스 정책비교 분석, 정보통신정책연 구원, 2000. 12.

다.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전기통신역무는 제1종은 7개, 제2종은 4개 역무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1998년 3월 이후 제1종, 제2종 모두 음성전송, 데이터전송, 전용의 3개 역무로 간소화하였다. 역무는 제1종, 제2종에 관계없이 음성전송, 데이터전송, 전용 등 3개로 분류하며 역무 구분외에도 업무(양태)라하여 역무를 국내 또는 국제, 고정 또는 이동, 이동의 경우 교통기관대상 또는 휴대로 구분하고 있다. 제1종 사업자가 역무를 추가하는 경우 총무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지역별 역무분류를 폐지함으로써 NTT 동·서 시내전화를 제외하고는 지역별역무진입에 대한 규제는 없고, NTT 동·서 시내전화에 대해서는 NTT법을 통해 시내전화만을 제공하도록 규제하며, 이동전화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역무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 주파수로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데이터전송 역무 추가 허가신청을 하면별다른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

| 역무 구분 | 종 류 | |
|--|--|--|
| 음성전송 | 기본적으로 4km 대역의 음성 이외의 음향을 전송 교환하는 기능을 가진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로 데이터전송 역무 이외의 것(음성과 기타 소리) | |
| 데이터전송 부호 또는 영상을 전송교환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 | |
| 전 용 | 특정 사람에게 전기통신설비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하는 전기통 신 서비스 | |

<표 6> 역무구분 체계

*출처: 총무성 우정사업청, 電氣通信事業參入マニュアル, 1999. 3.

라. 인터넷 전화에 대한 분류

인터넷전화는 역무 구분에서 음성역무의 하나로 제1종사업자와 일반 2종 사업자가 특별한 규제 없이 허가(1종) 또는 신고(일반2종)로써 진입할 수 있으며, 공전공 접속허용으로 원칙적으로 규제는 없었다. 또한 1997년 8월 제2종사업자에 의한 국제 인터넷전화가 자유화되었다. ISP는 설비보유 유무에 따라 제1종 또는 일반2종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역무, 양태의 분류는 동등한 법률적 적용을 받고, 제1종의 경우 제1종 사업자로서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제공하는 역무는데이터전송 역무로 분류했다.

마, 비 팎

그러나 이런 구분방식에 의하면 1종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특히 1종으로 분류된 기업이 전국시장의 독점적사업자라면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1종으로 분류된 것 안에는 대규모 회사인 NTT이외에 중계기, 지역계, 위성계, 이동통신으로 분류되어 있는 각종 사업자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일률적 규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116) 또한 수급조정과 철수조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복수의 대체적인 공급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공급의 불안정성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117)

2) 요금규제

전기통신사업자별로 요금규제에 차등이 있다.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가 제공하는 전화, 전신, 전용선 등의 기본적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 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전신전화동사 시절에 이

¹¹⁶⁾ 경쟁과 규제, op.cit., p.67.

¹¹⁷⁾ 경쟁과 규제, op.cit., pp.65-72.

러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 는 공중전기통신법을 개정해야 했다. 즉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민영화된 이후에는 제1종 사업자의 시장이 경쟁시장체제이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해 놓던 시스템에서 한층 완화된 인가제로 변경함에 따라, 요금 규제가 국회와행정부의 2원 체제에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1원화 체제로바뀌었다.

여기서 요금 자유제를 실시하지 않고 인가제를 채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경쟁원리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제1종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용자의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정해진 조건을 받아들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1종 사업자가 제2종 사업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제2종 사업자는 각 기업에 대해 다양한 통신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기반이 되는 통신회선을 제1종 사업자로부터 임차해야만 한다. 따라서 제1종 사업자가 정하는 요금은 제2종 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1종 사업자도 제2종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경쟁 상대인 제2종 사업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계약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

셋째, 인가제는 요금만 계약 조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종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제공서비스의 요금과 계약 조건 이외의 것들에 대 해서는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 | 제1종 사업자 | 제2종 | 사업자 |
|------------|---------|-----|-----|
| | | 특 별 | 일 반 |
| 요금결정 | 우정성 인가 | 신고 | 자유 |
| 요금약관의 공개의무 | 0 | 0 | × |

<표 7> 전기통신사업 요금 규제

3) 상호접속

전신전화주식회사와 신규진입사업자간에는 보유 시설이나 자금력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신규사업자들이 자력으로 기간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가입자망 단계에서는 기존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회선 상호접속은 회선사업자의 경우 신규투자비용을 절감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덜게 되면, 이용자에 대한 요금 인상 요인도 억제되므로, 통신 정책적으로도 상호접속을 유도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 사업자간의 접속협정 체결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약 체결시 협상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에 대등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1종 사업자가 체결하는 상호접속 협정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도입하였다. 여기서는 협정의 내용이 경쟁의 촉진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이용자에게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 여부 및 요금징수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했다.

2. 2003년 법의 개정과 사업자 및 역무분류 체계

(1) 개 요

1985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래, 일본의 통신시장은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법개정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정은 "전화시대"에 맞춘 규제 대응이었 기 때문에 최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 규제정책의 변화 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전화시대"에서 "인터넷시대"로의 기술혁신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에 걸맞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전기 통신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2004년 개정법은 서비스 규제와 인프라 규제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서비스 규제는 시장참여와 퇴출규제, 요금 및 제공조건에 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이용자의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자유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인프라 규제는 공익사업특권의 인정, 네트워크의 안전·신뢰성 확보, 사업자간 접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기본적인 규제체계를 유지하되 주요 설비유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이하에서 개정법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배경

기술발전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다양하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 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은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 및 "IT 기본법"상에 "널리 모든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첨단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촉진과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정보통신심의회"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환경 하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IT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브로드밴드

및 IP화의 진전, 사업자간 경쟁촉진을 통한 이용자 편익의 극대화를 위해 첫째, 적극적인 경쟁정책의 전개, 둘째, 새로운 경쟁구도의 도입, 셋째, 소비자 보호의 강화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적극적인 경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신규 참여 촉진과 네트워크 개방을 위한 경쟁정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브로드밴드화, IP화에 따른 IT 경쟁구도의 재정비와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행정의 충실화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함께 유효경쟁 평가, 사업자간 분쟁처리와 경쟁활성화 방안과의 연계, 경쟁가이드라인 마련,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금지법의 연계,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 구도의 재정비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2002년 8월에는 정보통신심의회가 "IT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정보통신사업의 경쟁정책 방향성"이란 최종 의견서를 총무성에 제공하였고, 2003년 7월에는 총무성이 전기통신회선 설비 유·무에 근거한 현행 제1, 2종 사업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개정으로 모든 사업은 "전기통신사업"으로 재분류 되고 전체적인 규제의 합리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3)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

1) 제1종 및 제2종 사업 구분의 폐지

전기통신사업법은 1985년 일본전신전화공사, 국제전신전화공사의 민영화와 함께 두 사업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전분야에 대해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의 저렴화와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할 목적으로 도입한 법률이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의 자체설비 보

유 여부에 따라 제1종, 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제1종, 제2종 사업자의 사업규모와 서비스 등에 대한 특성이 분명히 구별되었으며,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서비스의 규제 수준도 결정되었다.

이는 당시 제1종 전기통신사업이 전국 규모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주로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고, 제2종 사업은 주로 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데이터 서비스와 전화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기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제1종 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총무성 장관의 허가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보장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서비스 약관규약을 통해 모든 이용자에게 균일한 요금과 동등한 제공조건이 요구되는 이른바 전력, 가스와 같은 공익 사업적 규제를 받아왔다. 반면, 제2종 사업은 등록 또는 신고의 간소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였고, 서비스 내용도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제1종 사업자 중에 지역 CATV 서비스와 대도시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2종 사업자 중에도 인터넷접속 서비스와 같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도 등장했다. 또한 IP전화, DSL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증가하는 등 기존의 제1종, 2종 사업 구분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통신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어 온 약 20년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다수의 신규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빠른 기술혁신과 네트워크의 IP화, 브로드밴드화를 통해 음성, 데이터, 영상등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했는지 여부는 사업구분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동일한

서비스 시장에서도 사업구분의 경계를 넘어선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 상이 나타났다.

| 1986년 전기통신사업법 제정 당시 |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 | | | |
|---------------------------|---|--|--|--|--|
| | 대규모 전화사업자 | 부가서비스사업자 | | | |
| | o 자체 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NTT, KDD, 제2전전(DDI), 일본텔레콤 등 7개 사업자 - 주로 전화서비스를 제공 | 마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로 개별 기업의 필요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부가가치전화서비스를 제공 | | | |
| ∇ | | | | | |
| 2003년 | o 극히 제한된 규모의 회선설 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 o 불특정 다수의 일반이용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종 | | | |
| 2003년 | 하는 제1종 사업자 등장 | 사업자의 등장 | | | |
| 2003년 최근 시장 동향 | | | | | |
| | 하는 제1종 사업자 등장 - CATV 제1종 사업자 - 무선 LAN 사업자 | 사업자의 등장 - 인터넷 접속서비스 - IP전화서비스 | | | |
| _ | 하는 제1종 사업자 등장 - CATV 제1종 사업자 - 무선 LAN 사업자 - 대규모 액세스 사업자 등 | 사업자의 등장 - 인터넷 접속서비스 - IP전화서비스 - ADSL 서비스 등 ▽ | | | |

<표 8> 사업자 분류체계의 변화

2) 시장참여와 퇴출 규제의 완화

개정 이전의 전기통신시장의 신규 참여와 퇴출 규제는 제1종, 2종 사업자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 왔다. 제1종 사업자의 경 우 총무성 장관의 허가와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약 1~2개월 동안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제2종 사업의 경우는 역무에 따라 다시 일반 제 2종 전기통신사업과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구분되며, 등록 또 는 신고절차를 통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접속 제도의 정비, 도매 전기통신역무제도의 도입, IP 화로 인한 사업자의 네트워트 구축이 진전되고 회선설비 사업의 신규

참여가 용이해짐에 따라, 이미 400여 개 이상의 제1종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였고, VoIP기술을 통해 제2종 사업자이면서 공공성이 높은음성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요구되었고, 사업 참여시 거쳐야 했던 각종 심사와 허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또한 2004년 개 정법에서는 대규모 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소한 심사와 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며, 그 이외 소규모 회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경우 신 고절차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변경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여 서비스 구역의 변경, 설비 변경시 기존의 제1 종 사업자의 변경허가제를 폐지하고 간소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로 대체하였다.

| 제1종 사업 (회선설비설치) | 특별 제2종 사업 | 일반 제2종 사업 |
|---|---|-----------------|
| 허가 | 등록 | 신고 |
| o 조사내용 - 법령위반자의 배제 - 재정적 기초, 기술적 능력 보유 - 사업계획의 확실성, 합리성 - 공정경쟁 등 검토 o 심의회의 자문 (1-2개월 심사) | o 조사내용 - 법령위반자의 배제 - 재정적 기초, 기술적 능력 보유 o 심의회의 자문 (15일 심사 원칙) | o 심의회의 자문 생략 |

| | V | V |
|----------|--------------------------------------|--------------------------------|
| | 대규모 회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기타사업(대규모 회선설비를 설치하는 사 업 이외) |
| 개정 이후 | o 조사내용 - 법령위반자의 배제 - 공정경쟁 등 검토 | o 심사 생략 |

| o 심의회의 자문 | |
|-------------|--|
| (15일 심사 원칙) | |

모든 사업자가 비즈니스 기회 획득·이용자 필요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 전개 가능

<표 9> 변경된 규제완화 제도

한편, 사업의 휴업 또는 폐지는 이용자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주력하였다. 지금까지는 제1종 사업자의 경우 총무성 장관의 사전 허가와 제2종 사업자의 경우 사후 신고를 필요로했다. 특히 그 동안 이용자 보호 규정이 없었던 제2종 사업자 중에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사후 신고제로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3) 서비스제공 조건의 자유화

개정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는 제1종 사업자와 특별 제2종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 계약약관의 작성과 신고절차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요금과 계약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제2종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는 요금, 계약약관의 작성 및 신고의무 없이 사업자별로 자유로운 요금설정과 제공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전화서비스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이나 제공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로부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기통신 서비스가 날로 고도화·다양화되고, 제1종과 제2종 사업자의 구분 없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 여, 2004년 개정을 통해 약관제도를 기본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사업 자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모 든 사업자에 대해 계약약관의 작성·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한 다 양한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였다.

단, 시내전화, 공중전화와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전국적인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성격상모든 이용자에 대해 적절한 요금과 계약조건에 의한 공평한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계약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꾀했다.

4) 소비자 보호의 강화

2004년 개정법에서 소비자 보호의 기본 목적은 이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이용자가 복잡한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약관의 작성, 등록제, 신고제의 실시 등 최대한의 규제 완화와 전기통신사업자(계약대리점)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사업의 휴업 또는 폐지의 경우, 이는 서비스의 정지를 의미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서비스 정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에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조건 중 이용자에 대한 약관내용 설명 의무 부과와 고객 불평처리 의무도 강화되었다. 전기통신 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용자의편익이 향상되는 반면, 서비스의 복잡화로 인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의제공에 관한 계약체결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아니라, 계약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대리점에서의 설명이부적절하거나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쟁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용자가 최소한 이해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불만과 질문을 접수 받은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5) 공익사업특권의 인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로, 공·사유지 등을 사용하여 전선 및 광파이버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전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도 사업개시 허가를 받은 제1종 사업자에게 공·사유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공익사업특권)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기술변화가 진화됨에 따라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매설하는 사업자 중에는 대규모 인프라를 매설하기 위해서 공익사업특권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이미 기존에 매설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공익사업특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자도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4년 개정에서는 회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중 CATV사업자와 위성관련 사업자를 제외한 공익사업특권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만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공익사업 특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6) 기 타

그밖에 2004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신뢰성 확보 문제와 사업자간 접속 규칙 정비 그리고 중요 통신설비의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로서 공공성이 높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매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기술기준적용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생활 중 가장 기초적인 통신 수단

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 일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간 접속 룰의 경우도 기존 비대칭규제의 근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내용 일부만을 개정하였다. 즉, 다른 사업자와의 접속이 필수적인 지역 고정망 설비 및 휴대전화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접속약관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간 개별 접속협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신고절차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총무성 장관 또는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에서 분쟁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수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110번과 119번 등 긴급통신과 국가 방재기관 이용에 관한 중요통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중요통신의 원활한 소통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중요통신의 우선적 취급의무와 사업자간 접속시 중요통신 확보의무가 추가되었다.

(4) 시사점

개정 법률로 인해 시장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이 업종에서의 신규 참여가 촉진되고, 수직·통합적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등 광범위한 시장 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는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전기통신 분야의 경쟁활성화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고,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걸친 시장구도변화와 경쟁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기본적인 사업규제 체계인 제1종, 제2종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법 제도전반에 걸친 근본적으로 변화된 규제틀을 마련하였다. 제1종, 제2종 전기통신사업 구분의 폐지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절차를 통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설비사업자에 대한 상호 접속의무는 유지되지만 설비의 유·무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 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둘째, 사업 참여 · 변경 · 퇴출에 관한 큰 폭의 규제완화와 사업변경에 관한 규제 완화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기회를 늘리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해 주는 토대가 되었다. 원활한 사업 참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모든 사업자가 비즈니스 기회와 이용자 needs에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빠르고 용이하게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도 타사업자에 의해 대체서비스의 제공이 확보되는 시장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서비스 제 공 조건의 자유화로 인해 모든 사업자가 약관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 자의 필요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소 비자가 제1종, 제2종 사업자의 구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기술혁신과 경쟁 활성화에 따른 편익에 대해 이용자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강화되었다. 이용자가 복잡화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많은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와 사업자가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다섯째, 시장 참여·퇴출 규제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 또는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인프라 구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익특권 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여섯째, 기술표준, 접속 제도 등 타 사업자간 중요통신 확보에 대한 조치가 정비되어 지속적 인프라 정비의 체계를 다지고 원활한 네트워 크 구축의 틀을 마련하였다.

제4장 결론

제 1절 우리법의 문제점

1. 현행 통신사업의 사업자 분류

(1) 서 론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법령은 개방화 단계를 거쳐 제·개정되어 왔는데 그 규정의 내용이 미국이나 독일법제와 달리 분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전 기통신기술의 진흥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전기통신망의 관리 및 통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 신사업자의 허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요건, 전기통신사업자간 적정 경쟁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규정한다.

그 외 무선전파에 관한 전파법에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전파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문화관광부 소관인 방송법이 종합유선방송국시설의 설치·유지와 전송로 시설의 분계점 등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방송에 관한 규정, 방송국 경영, 방송위원회설치·운영, 방송순서의 편집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자규제를 받고 이동무선공중전화·이동전화지하중계기 등에 있어서는 전파법 상의 무선국 개설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방송법 상의 유선방송전송망을 사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중복규제를 받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를 각각 기간통신사 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기간통 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신·전화 등과 같이 공익성이 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다음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 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한 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 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 된다. 또 이와 별도로 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있다.

(2) 사업자 분류

1)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위성, 휴대통신, 주파수, 공용통신, 발신전용휴대전화, 무선호출 등의 사업을 말한다.118) 전기통신사

¹¹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전화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시내전화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역무

나. 시외전화역무 : 통화권간의 전화역무

다. 국제전화역무 :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역무

[·]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임차한 국내

업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 경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제외된다.119)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특히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120) 이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기간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자기소유로 보유하고 이를 통한 기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이나 부가통신사업에 진출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겸영하고자하는 경우 부가사업을 위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121)

2) 별정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자신이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기간통신 서비스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12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기타역무 :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 나 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

¹¹⁹⁾ 전기통신사업법 5조 2항.

¹²⁰⁾ 전기통신사업법 5조 6항.

¹²¹⁾ 전기통신사업법 21조 단서.

¹²²⁾ 전기통신사업법 4조 3항.

이것은 1997년 2월 WTO의 기본통신협정이 타결되어 재판매서비스가 개방되고, 국민의 통신이용편익 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대형건물의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1998년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고, '교환설비보유'에 따라 설비보유재판매, 설비미보유재판매, 구내통신사업으로 세분된다. 설비보유재판매사업에는 음성재판매사업, 인터넷폰사업, 콜백전화사업 등이 있으며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에는 재과금사업과 호집중사업 등이 있다.

3)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 한다.123)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Data Transmission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정보·통신·방송의 융합으로 부가통신사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과 기업의 전산화 활용수준이 향상되고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 분야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9년 3월말까지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체수는 2,478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회선재판매, PC통신, E-mail, CRS(Computer Reservation Service), DB/DP, Internet,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전송망사업자

전송망사업자는 2000년 1월 12일 개정 방송법 2조 14호 규정에 따라 전송선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자이고 방송법 9조 10항에 따라 현재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¹²³⁾ 전기통신사업법 4조 4항.

1993년 12월 77개 종합유선방송구역 중 1차로 53개 구역에 한국통신, 한국전력 및 데이콤을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이어 1997년 7월에 2차로 나머지 24개 구역에 한국전력, 한국통신, SK텔레콤, 데이콤, 삼양텔레콤, 한국무선CATV, KNC 및 1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20개 업체를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하였다. 한편, 1996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설비는 CATV 프로그램의 전송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되었으며, 전송망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국이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이 한국전력, 종합유선방송국과 협력하여 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분류 문제점

현행 전기통신법은 먼저 회선설비 보유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나누고 다시 제공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구분하여 후자를 부가통신 서비스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가서비스업이란, 미국 FCC의 통신개혁진행과정에서 기본서비스(basic service)와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를 구분하여 양자를 나누었던 과정에서 부가서비스(Enhanced Service)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방송법에서 기존의 통신설비 이외의 Cable 전송망만을 공급하는 자를 전송망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2004년 개전 이전의 독일의 법제에서 통신서비스의 '종류'를 기준으로 엄격한 역무분류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우리법은 이와는 달리 일단 '시설'보유를 기준으로 1종과 2종사업자로 구분하는 일본의 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무분류체계에 대해서는 과

거 일본에서 제기되었던 주장과 비슷한 비판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단순히 통신회선설비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동법 제29조의 이용약관의 신고의무 등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물론 동법 29조 단서는 요금인가제를 시장점유율기준에 의하여 다시 세분화 시키고 있지만, 현재 통신기술의발달에 비추어 볼 때 통신 회선설비 보유만을 기준으로 이를 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의 범위에는 전국적 단위의 Data Transmission 사업자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동법이 통신설비를 보유하여 기간통신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만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현재 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신서비스는 기존의 유·무선통신회선이 아닌 유선방송회선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고, 오히려 유선방송 보다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Cable 선로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송망사업자만을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일단 Cable 회선의 제공은 통신사업자로 보아야할 것이고, 제공 서비스가 일방적인 방송의 형태인 경우에만 방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법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전기통신 사업법은 이미 2003년 개정을 통해 엄격한 역무분류제도에 의한 시장 진입장벽을 거의 철폐하였다. 특히 1종사업자와 2종 사업자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설비보유를 기준으로 인·허가 규제를 하던 구분을 완 전히 없애고, 각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차이가 없 는 경우에는 외형적인 설비의 유무나 설비의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개혁은 각 서비스 간의 융합현 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발전의 변화를 수용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우리법의 경우에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시설보유유무의 구별에 의한 행정규제를 지속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호교차 되는 대체제로 이용되고 있는 유사기술간의 통합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이후 개정된 독일과 일본의 통신법이 미국과 유사한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규제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여 유사서비스 위주로 사전규제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주파수와 같은 공공자원의 분배를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면 사업자들에게 시장참여와 퇴출을 자유를 주는 것이 통신시장의 경쟁의 촉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독일, 일본의 시장진입장벽 철폐 사례는 이와 같은 전기통신시장의 개혁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역무분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결

1990년 전까지 폐쇄적인 체제로서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인식되던 통신사업은 1996년을 기점으로미국통신법의 개혁과 독일,일본 통신산업의 개방이라는 과정을 거쳐왔다. 1996년 까지는 통신시장의 제1세대 개방이라고 할 수 있고,이시기의 주된 관심은 그동안 국가주도형 독점체제 혹은 사적기업의 독점체제로 유지되어온 통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독점체제에서 사기업으로 전환하고 전환된 통신회사의 네트워크 자원을 새로운 경쟁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설비보유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이러한 사전규제제도를 위해 사업자간의 역무를 분류하고 설비보유자들의 새로운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혹은 진입규제정책을 실행해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급속도록 발전하기 시작한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통신설비를 위주로 제공되는 통신서비스를 전혀 다른 이종의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만듬으로써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서비스 진출 제한 규정과 그 외의 시장진입규 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융합화로 인해 유사전송기술간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설비를 보유로 사업자간의 역무를 엄격히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종의 사전규제를 행하는 규제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현행 우리 전기통신사업법과 유사한 사업자간의 역무를 분류해 규제해온 독일과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전면 개정되어 엄격한 역무분류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 사업자들의 시 장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한 규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진행방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우리법의 통신사업법상의 규제개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 독일, 일본의 규제개혁을 참고로 하여 현재의 폐쇄적인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분류체제를 실질적인 서비스의 종류를 기준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서 사업자들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참여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통신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되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 2003년 개정 일본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2001, 법률 제62호)

전기통신사업법(2003.8.1, 법률 제138호)

제1장총칙

(목적)

제 1 조 이 법률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성에 관련하여 그 운영을 적 절하고 합리적으로 함으로서 전 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 보하는 동시에 그 이용자의 이익 을 보호하여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 2 조 이 법률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드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전기통신 : 유선, 무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전달, 수신함 을 말한다.
 - 2.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행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그 외의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
 - 3.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 고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 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전기통신사업 : 전기통신역무 |

제1장총칙

(목적)

세1조 이 법률은 전기통신사업의 공공 성에 비추어 그 운영을 적절하고 합 리적으로 함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통 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하는 동 시에 그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의 편익을 확보하여 공공의 복지를 증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 이 법률에서 다음 각호에 드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전기통신 유선, 무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 을 송신, 전달 또는 수신하는 것을 말하다.
 - 2.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을 하기 위 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적 설비를 말한다.
 - 3.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 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 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역무를 타 를 타인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이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공하는

제공하는 사업(방송법(소화25년 법률 제132호)제52조의 10제1항 에 규정하는 수탁방송역무, 유 선라디오 방송역무의 운용의 규 정에 관한 법률(소화26년 법률 제135호) 제2조에 규정하는 유 선라디오방송, 유선방송전화에 관 한 법률(소화32년 법률 제152 호)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유 선방송전화역무, 유선텔레비전방 송법(소화47년 법률 제114호) 제 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유선텔레 비전방송 및 동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 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업을 제 외)을 말한다.

- 5.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 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9조 제 1항의 허가를 받은 자,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한 자 및 제24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6. 전기통신업무 : 전기통신사업 자가 행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 공업무를 말한다.

(검열의 금지)

제 3 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통신은 검열해서는 안된다.

(비밀의 보호)

- 제 4 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통신비밀은 침 범해서는 안된다.
 - 2. 전기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직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취급

사업(방송법(소화25년 법률제132호) 제52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 탁방송역무, 유선라디오방송역무의운 용규정에관한법률(소화26년 법률제 135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유선라 디오방송, 유선방송전화에관한법률(소화32년 법률제152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선방송전화역무, 유선텔레비전방송법(소화47년 법률제114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선텔레비전방송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텔레비전방송시설 의 사용승낙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5.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9조의 등록을 받은 자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6. 전기통신업무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업무를 말한다.

(검열의 금지)

제 3 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통신은 검열해서는 안된다.

(비밀의 보호)

- 제 4 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통신비밀은 침범해서는 안된다.
 - 2. 전기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 직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통신에 관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 다.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마찬가 지이다.

중에 관계되는 통신에 관해 알 게 된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조약) 다. 그 직을 물러난 후에도 마 찬가지이다.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조약)

제 5 조 전기통신사업에 관해 조약 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 칙

(사업의 종류)

- 제6조 전기통신사업의 종류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 및 제2종 전기 통신사업으로 한다.
 - 2. 제1종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 신회선설비(송신 장소와 수신장 소간을 접속하는 전송로 설비 및 이와 함께 설치된 교환설비,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동일) 를 설치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 3. 제2종 전기통신사업은 제1종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전기통신 사업이다.
 - 4.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및 제24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동일)는 그 설치하는 전기 통신설비(전송로설비 제외. 이하 이 항에서 '제2종 전기통신사업 용 설비'라 한다)가 있는 지점 과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제5조 전기통신사업에 관해 조약에 별 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 칙

(이용의 공평)

제 6 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의 제공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대우 를 해서는 안된다.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제 7 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국민생활 에 불가결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 본 전국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전기 통신사업자는 그의 적절, 공평 및 안 정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요통신의 확보)

- 제 8 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천재, 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구조, 교통, 통신 또는 전력의 공급확 보 및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 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을 우선적으 로 취급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 해 긴급히 행할 필요가 있는 기타 통 신은 총무성령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도 동일하다.
 -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기통신사 업자는 필요시 총무성령에 정한 기

사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은 계약을 체결한 자로써 전 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자를 말 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의 전 기통신설비가 있는 지점 사이에 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이용 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 기통신회선에 접속되는 것이며 해당 이용자가 통상 회선(그들 지점간의 해당 제2종 전기통신 사업자가 스스로 전기통신역무 의 제공에 이용하고 있는 타 전 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을 말함)의 이용을 바꿔 선택한 경 우에 제공하는 것에 한하여 스 스로 설치한 전송로설비와 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의 공평)

제 7 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대해 부당한 차별 적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중요통신의 확보)

제 8 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천재, 사변, 또는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재해의 예방 또는 구원, 교통, 통신이나 전력의 공급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공공이익을 위해 긴급히 행할 필요가 있는 기타 통신으로 총무성령에 정한 것에 대해서도마찬가지로 한다.

2. 전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준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통신(이하『중요통신』이라 한다)의 원활한 실시를 타전기통신사업자와 서로 제휴하면서 확보하기 위해, 타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를 서로 접속할 경우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요통신의우선적인 취급에 대해서 정하거나,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2 절 사업의 등록 등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제 9 조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아야한다. 다만, 그 자가 설치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송신장소와 수신장소 간을 접속하는 전송로설비 및 이것과일체로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것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 및 해당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는 구역의 범위가 총무성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전조항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 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함께 법 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 ②업무구역
- ③전기통신설비의 개요
- 2. 전항의 신청서에는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

필요시 총무성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정 지할 수 있다.

제 2 절 사업 허가 등

제 1 관 제1종 전기통신사업

(제1종 전기통신사업의 허가)

- 제 9 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을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대신의 허 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총무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①성명,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
 - ②총무성령으로 정한 구분에 의해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 및 그 양식
 - ③업무구역
 - ④전기통신설비의 개요
 - 3. 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와 기타 총무성령에 정한 서류 를 첨부한다.

(허가의 기준)

- 제10조 총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항의 허가 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①그 사업을 적확하게 수행하기 에 충분한 經理的 기초 및 기술 적 능력이 있을 것
 - ②그 사업의 계획이 확실하며 합 리적일 것

음을 서약하는 서면, 기타 총무성령 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의 실시)

- 제11조 총무대신은 제9조의 등록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 ①전조 제1항 각호에 게재한 사항 ②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
 - 2.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 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록의 거부)

- 제12조 총무대신은 제10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때 또는 해당 신청서 또는 그의 첨부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①이 법률 또는 유선전기통신법(소화 28년 법률 제96호) 또는 전파법(소화 25년 법률제131호)의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고, 그 집행을 끝내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②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취소를 받고, 그 취소의 날로부터 2
 -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법인 또는 단체에 있어서는 그 임 원 중에 앞의 2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④그의 전기통신사업의 개시가 전기 통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적절하

③기타 그 사업의 개시가 전기통신 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적절할 것

(허가의 결격사유)

- 제11조 총무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의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 ①이 법률 또는 유선 전기통신법 (1953년 법률 제96호) 또는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의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하며, 그 집행을 끝내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②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받고, 그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③법인 혹은 단체로 그 임원 중 전 2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 을 것

(사업 개시의 의무)

- 제12조 제9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한다)는 총무대신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 2. 총무대신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나 양식, 업무구역을 구분 하여 전항의 기간 지정을 할 수 있다.
 - 3. 총무대신은 제1종 전기통신사 업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2.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문서에 의해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변경등록 등)

- 제13조 제9조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0 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총무대신의 변 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무성 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2. 전항의 변경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와 따라,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제10조 제2항, 제11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등록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1조 제1항 중 <다음 사항>이라는 것은 <변경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조 제1항 중 <제10조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라는 것은 <변경등록과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로 바꾸어 적용한다.
 - 4. 제9조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으로 변경이 있은 때, 또는 제1항 단서의 총무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가 있는 경우에, 총무대신은 지체없이 당해등록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등록의 취소)

제14조 총무대신은 제9조의 등록을 받

- 4.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사업의 개시 전에 제9조 제1항의 허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설비(총무성령에 정한 것을 제외)가 제41조 제1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 총무대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사업(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나 양식, 업무구역을 구분하여 기간의 지정이었을 경우에는 그 구분에 관련된 사업)을 개시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명 등의 변경)

제13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 9조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된다.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 등의 변경) 제14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 9조 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단, 총무성령에 정한 경미한변경에 대해서는 이 제한은 없다. 2.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항

- 2. 제1중 선기중신사업사는 선양의 총무성령에 정한 경미한 변경을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알려야 한다.
- 3. 제10조 및 제11조(제1항 제2호 를 제외)의 규정은 제1항의 허 가에 대해 준용한다.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 도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해당 제9조의 등록은 받은 자가 이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 공공이 익을 저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부정수단에 의해 제9조의 등록 또는 전조 제1항의 변경 등록을 받은 때 ③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것으로 되는 때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 우에 준용한다.

(등록의 말소)

제15조 총무대신은 제18조 제1항이나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의 전 부의 폐지 또는 해산의 신고가 있은 때,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 록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제9조의 등 록을 받은 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제16조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제9조의 등록을 받을 자를 제외한다)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①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함께 법 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 ②업무구역
- ③전기통신설비의 개요(제44조 제1항 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경 우에 한함)
- 2. 전항의 신고를 한 자는 동항 제1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은 때에는

4.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 (업무구역 감소의 경우 제외)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1항 및 제4항 중 제9조 제 1항이라고 된 것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것이다.

(업무의 위탁)

- 제15조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 역무의 일부를 위탁하 고자 할 경우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총무대신은 전항의 인가 신청이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항을 인가해야 한다.
 - 1. 그 전기통신 역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당해 위탁을 필요 로 하는 특별 사정이 있을 것
 - 2. 수탁자가 당해 업무를 행하는 데 적합한 자일 것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와 법인의 합병) 제16조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의 전 부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총 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②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단,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과 제1종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이제한은 없다.
 - ③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전 2항의 인가에 대해 준용한다.

-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 3. 제1항의 신고를 한 자는 동항 제2 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총무대 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총무 성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대해 서는 그렇지 아니한다.

(승계)

- 제17조 전기통신사업의 전부를 양도하 는 때,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서 합병, 분할(전기통신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에 한한다)이나 상속이 있는 때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 부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 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 인, 분할에 의해 해당 전기통신사업 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나 사속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의 협의에 의해 해당 전기통신사업 을 승계할 상속인을 정한 때에는 그 사람.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는 전기 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제9조의 등록 을 받은 자인 경우에 있어서 해당전 기통시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전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 분할에 의해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 이나 상속인이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서 제3호까지의 어느 것에라도 해당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의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 야 한다.

④제1종 전기통신사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 또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 당해 사업의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양도한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은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를계승한다.

(상속)

- 제17조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상속 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협의 에 의해 당해 제1종 전기통신사 업을 계승해야 하는 상속인을 정 할 때에는 그 사람. 이하, 동일)이 피상속인인 제1종 전기통신사업 자의 지위를 계승한다.
 - ②전항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후 60일 이내에 그 상속에 대해 총무대신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동항의 상속인의 신청에 대해 인가를 하지 않는 취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경과한 때 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때에 제1종 전기통신사업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전 항의 인가에 대해 준용한다.
- (사업의 휴지 및 폐지, 법인의 해산) 제18조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총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의 휴지 및 폐지와 법인의 해산) 제18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의 취지를 총 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 2. 전기통신사업장인 법인이 합병이 외의 이유에 의해 해산한 때에는 그의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도는 폐지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휴지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그취지를 주지시켜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전기통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절업무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계약약관)
제19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제공하는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제공조건(제52조 제1항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하는 기술적 조건과 관련된 사항 및 총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계약약관을 정해, 총무성령

②전항의 사업 휴지의 허가는 1 년을 경과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③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 의 해산 결의 또는 전 사원의 동 의는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 으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④총무대신은 제1종 전기통신사 업의 휴지 또는 폐지, 법인의 해 산에 의해 공공이익이 현저히 저 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제1항의 허가 및 전항을 인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허가의 취소)

- 제19조 ①총무대신은 제1종 전기통 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한 기간(동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 2. 전 호에 규정한 경우 외에,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공공이 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 3. 제11조 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국제 전기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동조 제1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영업소를 가지는 자에 한한다)가 동조제1항 제4호에서 제7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의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2.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계약약관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라도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의 기한을 정해 당해 계약약관 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① 요금액의 산정방법이 적정 또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
 - ②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전기통신설비 의 설치의 공사, 기타 공사와 관련 한 비용의 부담방법이 적정 또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
 - ③전기통신회선설비의 사용양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있는 때 ④특정의 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있는 때

- ⑤중요통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배려되고 있는 것이 없는 때 ⑥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으며, 기타 사회적,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당하기 때문에, 이용자 의 이익을 저해할 것이 있는 때
- 3.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약관에서 정할 요금, 기타 제공조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 에 의해 신고한 계약약관에 의하지 않고 당해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약관에서 정한 해 당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②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서 제 9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에는 문서로 이유를 첨부하여 통 지해야 한다.

(변경 허가의 취소)

제20조 ①총무대신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제4조 제4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의 해지정한 기간(제14조 제4항에준용하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후의기간)내에 그 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2 관 제2종 전기통신사업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종류)

- 제21조 ①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종류는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 및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 ②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은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 ③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은 전 기통신설비를 불특정 다수의 통 신 용도로 제공하는 제2종 전기 통신사업으로, 당해 설비의 규모 가 전기통신회선의 수용능력을 기 초로 하여 정령에 정한 기준을 초

감면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 해 신고한 계약약관에서 정한 해당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 면할 수 있다.

(지정전기통신역무의 보장계약약관)

제20조 지정전기통신역무(제3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제1 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제공하 는 전기통신역무로서 해당 전기통신역 무를 대신할 전기통신역무가 타사업자 에 의해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 기타 사정을 감안해서 해당 제1종 지 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 업자가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적정한 요금, 기타 제공조건에 기초해 제공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 다고 총무성령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자는 그 제공하는 지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제공조건(제52조 제1 항 또는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할 기술조건과 관 련된 사항 및 총무성령에서 정한 사항 을 제외한다. 제5항 및 제35조 제2항 에서도 같다)에 대해서 계약약관을 정 해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 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것으로 한다.

2. 지정전기통신역무로서 기초적 전

과하는 규모인 것 및 本邦 이외의 장소와의 사이에 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통신 용도로 제공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한다.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제22조 ①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 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성 령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성명, 명칭 및 주소와 함께 법 인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성명
- 2. 총무성령에 정한 구분에 의한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 및 그 양식
 ②전항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한다)는 동항 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총무성령에 정한 경미한 변경에대해서는 이 제한은 없다.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양도 등) 제23조 ①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또는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합병이나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한 법인 또는 상

- 기통신역무인 전기통신역무에 대해 서는 전항(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총무대신은 제1항(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계약약관(이하 『보장계약약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것에라도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보장계약약관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①요금액의 산정방법이 적정 또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
 - ②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전기통신설비 의 설치의 공사, 기타 공사와 관련 한 비용의 부담방법이 적정 또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때
 - ③전기통신회선설비의 사용양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있는 때 ④특정의 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있는 때
 - ⑤중요통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배려되고 있는 것이 없는 때 ⑥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으며, 기타 사회적,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당하기 때문에, 이용자 의 이익을 저해할 것이 있는 때
- 4.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롭게 지정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지정의 날이후 최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무대신에 신고하게 될 계약약관

속인은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 자의 지위를 계승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 제2 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계 승한 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 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 이 파산에 의한 경우일 때는 파 산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제24조 ①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 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총무대 신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무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성명,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2. 총무성령에 정한 구분에 의한 전 기통신 역무의 종류 및 그 양식
- 3.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 ③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와 기타 총무성령에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에 대해서는 동항 중 "그의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한 때에도 같은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롭게 제 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 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로 한다.
- 5. 지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지정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상대방과 요금, 기타의 제공조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장계약약 관에서 정한 요금, 기타 제공조건에 의하지 않고 해당 지정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 음 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계약약관 에서 정한 해당 지정전기통신역무 의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렇 지 아니하다.
- 6. 지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장계약약관에서 정 한 당해 지정전기통신역무의 요금 을 감면할 수 있다.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요금)

제21조 총무대신은 매년 적어도 1회,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정 전기통신역무에 대해서 그의 내용, 이용자의 범위 등을 보고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것(이하 『특정전 기통신역무』라고 한다.)과 관련한 요 금에 대해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특정 전기통신역무의 종별마다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의 적절한 원가 및 물가, 기타의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통상 실

(등록 실시)

- 제25조 ①총무대신은 전조 제1항의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한다.
 - 전조 제2항 각 호에 기재한 사항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②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등록 거부)

- 제26조 ①총무대신은 제24조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신청서나 첨부 서류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기재가었거나 또는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거부한다.
 - 1. 이 법률 또는 유선 전기통신법 이나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벌 금 이상의 형에 처하며, 그 집행 을 끝내거나 집행이 없어진 날 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2.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그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3. 법인 또는 단체로, 임원 중에 서 전 2호의 하나에 해당 사항 이 있는 자
 - 4. 그 사업을 적확하게 수행하기 에 충분한 경리적 기초 및 기술 적 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 ②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

- 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요금을 요금지수(전기통신역무의 종별마다, 요금의 수준을 표시한 수치로서 통신거리 및 속도, 기타 구분마다의 요금과 이것들이 적용되는 통신량, 회선수 등을 기반으로 총무성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해 정하고, 그 요금지수(이하 『기준요금지수』라고 한다)를 그 적용의 날이 총무성령에서 정한 날 전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특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변경후 요금의 요금지수가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준요금지수를 초과하는 것인 때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전조제1항(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과 상관없이 총무대신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 3. 총무대신은 전항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기준요금지수 이하의 요금지수의 요금에 의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해 신청과 관련된 변경후의 요금이 다음 각호의어느 것에라도 해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항의 인가를 해야한다.
 - ①금액의 산정방법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②특정한 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인 취급을 하는 것일 것
 - ③타 전기통신사업자와 부당한 경

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문 서로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해 야 한다.

(변경 등록 등)

- 제27조 ①제24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특별 제2종 전기통 신사업자라고 한다)는 동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무대신의 변경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단, 총무성령에 정한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이 제한은 없다.
 - ②전항의 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무성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한다.
 - ③제24조 제3항, 제25조 및 전조 규정은 제1항의 변경 등록에 대 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제1 항 중 <다음 사항>이라고 된 것 은 <변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 조 제1항 중 <제24조 제2항의 신 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 라고 된 것은 <변경 등록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제 2호 제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④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 24조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하며, 그 때 총무대신은 지체없이 당해 등록을 변경해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①총무대신은 특별 제2종 전

- 쟁을 일으키고, 기타 사회적·경제 적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당하 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
- 4. 총무대신은 기준요금지수의 적용 후에, 당해 기준요금지수가 적용된 특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의 요금지수가 당해 기준요금지수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요 금지수 이하의 요금지수의 요금에 의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 당해 특정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당해 특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한다.

(통화량 등의 기록)

제22조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제공 특정전기통신역 무의 통화량, 회선수 등을 기록해 두 어야 한다.

(계약약관등의 게시 등)

제23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지정전기 통신역무 또는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계약약관(제52조 제1항 또는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기술적 조건을 포함한다)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요금을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따라, 공표하고, 영업소, 기타의 사업

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이 법률이나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있 어서 공공이익을 저해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
- 부정 수단에 의해 제24조 제1 항의 등록 또는 제27조 제1항의 변경 등록을 받은 경우
- 3.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 ②제26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등록의 말소)

제29조 총무대신은 다음 조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23조 제3항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한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 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준용)

제30조 제23조의 규정은 특별 제2 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준용 한다.

제3절업무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제31조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 기통신역무(도매전기통신역무(오 소에서 공중이 보기 쉽도록 게시해 두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19조 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의 총무성령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된 제공조건에 대해서 준용한다.

(회계의 정리)

제24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또는 지정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 업자는 그 제공하는 기초적 전기통신 역무 또는 지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의 적정한 산정에 기여하기 위해 총무성령에서 정한 감정과목의 분류, 기타 회계에 관한 절차에 따라 그 회 계를 정리해야 한다.

(제공 의무)

- 제25조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업무구역에서의 기초적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2. 지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기통신사업자는 당해 지정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상대방과 요금, 기타의 제공조건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가 없으면, 그 업무구역에서의 보장 계약약관에서 정한 요금, 기타의 제 공조건에 의한 당해 지정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공조건의 설명)

제26조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 업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체결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를 로지 전기통신사업의 전기통신사 업 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 무를 말함. 이하 동일)제외. 이하 이조, 제31조 3, 제31조 4, 제34 조, 제101조 제2호, 제107조 제3 호 및 제108조 제3호에서도 동일) 을 정하여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 에게 신고해야한다. 이를 변경하 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②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 라 신고한 요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에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 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금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요금액의 산출방법이 적절하고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 2. 특정한 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 적인 취급을 하는 것일 때
-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부당한 경쟁을 일으키고 그 외 사회적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부 적당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 하는 경우

③총무대신은 매년 적어도 1회,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 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지정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지정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로 그 내용, 이용자 의 범위 등으로 볼 때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총무 성령이 정하는 것(이하 '특정전기 통신역무'라 한다)에 관한 요금에 대하여, 총무성령이 정하는 특정 제29조 총무대신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역무의 제 공을 받으려 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 인 자를 제외한다)와 국민의 일상생 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 약의 체결 또는 그의 매개, 중개나 대 리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총무성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전기통신역 무에 관한 요금, 기타 제공조건의 개 요에 대해 그 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고충등의 처리)

제27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조의 총무 성령에서 정한 전기통신역무와 관련 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 는 동조의 총무성에서 정한 전기통신 역무에 대한 이용자(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포함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자를 제외한다. 제 29조 제2항에서도 동일하다)로 부터의 고충 및 문의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업무정지 등의 보고)

제28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의 일부 를 정지한 때, 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해 통신의 기밀을 누설, 기타 총무 성령에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취지를 이유나 원인과 함 께 지체없이 총무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업무의 개선 명령)

전기통신역무의 종별(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총무성령이 정 하는 구분을 더욱 세분화한 구분 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종별 및 양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동일)마다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적절한 원가 및 물가 그 외의 경 제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 의 요금을 요금지수(전기통신역무 의 종별마다 요금수준을 나타내 는 수치로 통신거리 및 속도 그 외의 구분에 따른 요금액 및 그 것들이 적용되는 통화량, 회선수 등을 기초로 총무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수치를 말 한다. 이하 동일)에 의해 정하고 그 요금지수(이하 '기준요금지수' 라 한다)를 그 적용일의 총무성령 이 정하는 일수 전에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한다. ④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지 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특정전기통 신역무에 관한 요금을 변경하려 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후 의 요금지수가 해당 특정전기통 신역무에 관계되는 기준요금지수 를 넘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⑤총무대신은 전항의 인가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기준요금지수 이 하의 요금지수의 요금에 맞지 않 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해당 신청에 관계되는 변경 후의 요금 이 제2항 각 호 어느 것에도 해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 자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 또는 공공 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업무방법의 개선,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방법과 관련해 통신비밀의 확보에 지장이 있는 때 ②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한 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행하고 있는 때

③전기통신사업자가 중요통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려하고 있 지 않은 때

④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기초적 전기통신역무 또는 지 정전기통신역무(보장계약약관에서 정 한 요금, 기타 제공조건에 따라 제공 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를 제외한다. 다음 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도 동 일하다)의 요금에 대해, 그 금액 산정 방법이 적정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때 ⑤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제공조건 이 타전기통신사업자와의 사이에 부 당한 경쟁을 초래하고, 기타 사회 적 ·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합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 고 있는 때

⑥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에 관한 제공조건(요금을 제외 한다. 다음 호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 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과 함께, 전 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이 적정 또는 명확하지 않아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 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전 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총무대신은 기준요금지수의 적용 후에 해당 기준요금지수가 적용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요금이수를 넘을 경우는 해당 기준요금지수를 넘을 경우는 해당 기준요금지수 이하의 요금지수의 요금에 맞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을 제공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특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요금을 변경하도록 명할수 있다.

⑦전3항의 규정은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⑧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지정전기통신설비인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으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해제한도에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요금으로 간주한다.

⑨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요금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각각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요금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하고 있는 때

⑦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에 관한 제공조건이 전기통신 회선설비의 사용양태를 부당하게 제 한하는 것인 때

⑧사고에 의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위해 필요한 수리, 기타 조치를 신속하게 행하지 않은 때

⑨앞의 각호에 든 것 이외에, 전기통 신사업자의 업무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때 ⑩전기통신사업자가 국제전기통신사업 에 관한 조약, 기타 다른 국제약속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 지 않아서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접 속, 공용 또는 도매전기통신역무(전기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제 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대해서 특정의 전기 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 급을 행하고, 기타 이러한 것들의 업 무를 부당하게 운영함으로써 타 전기 통신사업자가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 하는데 지장이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 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 12)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 업의 경영에 의해, 이것과 전기통신 역무와 관련된 수요를 공통으로 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해서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의 해당 수요와 관련된 전기통신회선설 비의 확보 및 유지가 경영상 곤란하 따라 인가를 받은 요금이 아니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단, 제39조의3 제2항의 인가를 받은 계약에 따라 일반 제2종전기통신사업자 및 특별 제2종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절에서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절에서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경우 및 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하는경우는 예외이다.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 또는 제4항의 규정 에 의해 인가를 받은 전기통신역 무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통화량 등의 기록)

제31조의2 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제공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의 통화량, 회선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제31조의3 ①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총무성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을 정하여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제31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에의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에 대해서 준용한다.

게 되어, 공공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 될 우려가 있는 때

2. 총무대신은 전기통신사업자등이 제 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또는 전 기통신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업무방법의 개선,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지행위 등)

제30조 총무대신은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4조 제2항에 규정한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 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당해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업무와 관련된 최근 1년 간의 수익금 중, 해당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업무구역과 동일한 구역내의 전체의 동종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업 무와 관련된 당해 1년간의 수익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총 무성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한 경우 에는, 당해 비율의 추이, 기타 사정을 감안해서 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사 이에 적정한 경쟁관계를 확보하기 위 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기통신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계약약관의 신고 등)

- 제31조의4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제공조건(요금 및 총무성령 이 정하는 사랑 및 제49 제1항 또는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을만한 기술적 조건에 관계된 것을 제외)에 대해서 계약약관을 정해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이를 변경하려고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2.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관한 인가신청서를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계약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그 외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 해져 있을 것
 - ②전기통신회선설비의 사용양태 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 일 것
 - ③특정한 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않는 것 일 것
 - ④제8조 제1항의 통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히 배려되 어 있는 것일 것
 - ⑤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부당 한 경쟁을 일으키고 사회적 경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전기 통신사업자 및 제33조 제2항에서 규 정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 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에 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①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 비와의 접속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당해 타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당해 업무용 으로 제공하는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
 - ②그 전기통신업무에 대해서, 특정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우선적인 취급을 하거나 이익을 제공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취급을 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
 - ③타 전기통신사업자(제164조 제1항 각호에 든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 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통신 설비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 대해 그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규율 또는 간섭하는 것
- 4. 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당해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전기 통신사업자 및 제33조 제2항에 규 정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 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총무성령에서 정한 감정과목의 분류, 기타 회계에 관한 절차에 따라, 그 회계를 정리 하고,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수지상

제적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 당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 는 것일 때

- 3. 제38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계약약관 중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없이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한다.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4. 총무대신은 전항의 인가 신청 이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인가를 해야 한다.
-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약관이 정하는 제공조건에 대하여 총무대신이 표준계약약관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이를 변경하여 공시한 경우 포함)에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표준계약약관과 동일한 계약약관을 정하려고 하거나 또는 현재 정해져 있는 계약약관을 표준계약약관과 동일한 것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미리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약관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라신고하거나 또는 제3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6.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전기통신설비의 지정 시에 현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정

황, 기타 그 회계에 관해 총무성령 에서 정한 사항을 공표해야 하다.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

- 제32조 전기통신사업자는 타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당해 타 전기통신사업 자의 전기통신설비를 그 설치한 전기 통신회선설비에 접속할 취지의 청구 를 받은 때에는, 다음에 든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에 응해야 한다.
 - ①전기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에 지 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 ②당해 접속이 당해 전기통신사업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 는 때
 - ③전 2호에 든 경우 외에, 총무성령 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제33조 총무대신은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국의 구역을 구분해 전 기통신역무의 이용상황 및 도도부현 의 구역을 감안하여 총무성령이 정한 구역마다, 그 일부분이 이용자의 전 기통신설비(이동단말설비(이용자의 전 기통신설비로서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인 것을 말한다. 다음 조항 제1항에 있어서도 같다)를 제외한다) 와 접속되는 전송로설비중 동일한 전 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것으로서 그 전송로설비의 전기통신회선수가, 당 해 구역 내에 설치된 모든 동종의 전 송로설비의 전기통신회선의 수 중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총무성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 및 당해 구역에 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것과 일 체로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총무

- 하고 있는 계약약관 중 해당 전 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 신역무 제공에 관한 것으로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 로 제3항의 인가를 받은 계약약 관으로 간주한다.
- 7.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하는 제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였던 전기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해제 시 현재 정해져 있는 계약약관 중해당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한 것이며 제3항의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계약관으로 간주한다.
- 8.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약관이 정하는 제공조건에 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항의 인가를 받은 계약약관에 의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 9.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제공조건 (요금 및 총무성령이 정하는 사 항에 관한 것 제외)에 대하여 계약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 전 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마 찬가지이다.
- 10.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약관이 정하는 제공조건에 대해서는 동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계약 약관이 아니면 전기통신역무를

- 성령이 정한 것의 총체를, 타 전기통 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전기통신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에 저해하 지 않는 전기통신설비로서 지정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기 통신설비(이하 『제1종 지정전기통신 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는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 설비와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 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해, 당해 제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 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금 액(이하 이 조에서는 "접속료』라 한 다) 및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 신통신설비와의 접속장소(箇所)의 기 술적 조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 금을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별 도의 기타 접속조건(이하 "접속조건... 이라 한다)에 대해 접속약관을 정해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3. 전항의 인가를 받을 접속약관이 정하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 있어서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용자의 편의 향상 및 전기통신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것은 동항의 규정에관계없이 그 인가를 필요로 하지않는 것으로 한다.
- 4. 총무대신은 제2항(제16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제9항, 제10항 및 제14항에서도 같다)의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

제공해서는 안된다.

(요금 등의 게시)

- 제32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 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한 요금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요금 또는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요금 및 전조 제1항의 인 가를 받은 계약약관 (제49조 제1 항 또는 52조 제1항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 술적 조건을 포함한다. 제111조 제2호에서도 동일) 또는 전조 제5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계약약 관을 영업소 그 외의 사무소에서 공중이 잘 보이도록 게시해 두어 야한다.
 - 2. 전조의 규정은 제31조 제1항 또는 제31조의3 제1항의 총무성 령이 정한 요금 및 전조 제1항 또는 제5항의 총무성령이 정한 사항에 관계되는 제공조건에 대 하여 준용한다.

(회계의 정리)

제33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전 기통신 역무에 관한 요금의 적정 한 산정에 기여하기 위해 총무성 령에 정한 감정 과목의 분류와 기타 회계에 관한 절차에 따라 그 회계를 정리해야 한다

(제공 의무)

제34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정 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업무구역

- 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인가를 해야 한다.
- ①다음에 드는 사항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 イ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를 접속하는 것이 기술적 또 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장소(箇 所)의 기술적 조건
- 고 총무성령에서 정한 기능마다의 접속료
- 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것과 그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타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사항
- 二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을 정 한 전기통신사업자인가 여부
- ④특정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닐 것
- 5. 전항 제2호의 총무성령에서 정한 방법(동항 제1호 ㅁ의 총무성령에서 정한 기능 중, 고도로 새로운 전기

에 있어서의 전기통신 역무의 제 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업무 정지 등의 보고)

제35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 업무의 일부를 정지했을 때, 또는 전기통신 업무에 관해 통신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기타 총무성령에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유나 원인과 함께 지체없이 총무대신에게보고해야 한다.

(업무의 개선 명령)

제36조 ①총무대신은 제31조 4 제3 항의 인가를 받은 계약약관이 정하는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조건이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의해 현저히 부적당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2 제2항이 규정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 기간을 정하고 당해 요금또는 계약약관의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함을 명령할 수 있다.

②총무대신은 제38조의2 제2항의 인가를 받은 계약약관이 정하는 동항에 규정하는 제1종 전기통신 사업자가 취득해야하는 금액이 동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 가에 비추어 부적당하거나 해당 접속약관이 정하는 접속조건이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매우 부적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 우에는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 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의한당해 기능과 관련된 접속료에 대해서 정한 것에 한한다)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고도 신규 전기통신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한 경우에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의해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관련된통화량 또는 회선수의 증가에 대응해서 증가하게 되는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 관련된통화량 또는 회선수의 증가에 대응해서 증가하게 되는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 관련된통화량 또는 회선수의 증가에 대응해서 증가하게 되는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감안해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 6. 총무대신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접속약관에서 정한 접속료가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가에 비추어서 부적당하거나 당해 접속약관에서 정한 접속조건이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의해 현저하게 부적당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당해 접속약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7.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의 설치한 제1 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서 제3항의 총무성령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접속약관을 정해, 그의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도 같다.
- 8. 총무대신은 전항(제17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에 대해 상당 기한을 정해 당해 계약약관의 인가를 신청해야함을 명령할 수 있다.

③총무대신은 제38조의2 제5항 또 는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신고한 접속약관이 정하는 동 조 제2항 또는 제38조의4 제2항 이 규정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 자가 취득해야하는 금액 또는 접 속조건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 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접속약관 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④총무대신은 제1종 전기통신사업 자의 업무 방법에 관해 통신의 기 밀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사고에 의해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할 경 우에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 리와 기타 조치를 신속히 행하지 않을 때, 기타 제1종 전기통신사 업자의 업무 방법이 적절하지 않 아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1종 전 기통신사업자가 국제 전기통신사 업에 관한 조약과 기타 국제 약 속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1종 전기통신사 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또 는 공용,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대 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어 서 공공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다)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접속약관에서 정한 접속료 또는 접속조건이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종 지정전기통 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당해 접속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9.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거나 제7항(제17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접속약관(이하 이 조에 있어서는 『인가접속약관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않고, 타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설치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해서는 안된다.
- 10.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가접 속약관등에 의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당해인가접속약관등에서 정한 접속료 및접속조건과 다른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제4항 각호(제1호 1 및 미를 제외한다)에 적한 것에 한한다)의 그 설치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1.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가접속약관등을 공표해야 한다.
- 12.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는, 당해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 도에 있어서 업무 방법의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 총무대신은 일반 제2종 전 기통신사업자 및 특별 제2종 전 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 2종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의 업 무 방법에 관해 통신의 기밀 확 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사고에 의해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제 2종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와 기 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 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제2종 전기통신 사업자가 국제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조약 및 기타 국제 약속에 의해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 제2 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 비의 접속 또는 공용에 대해 특 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 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의 경영 에 의해 이것과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수요를 공통으로 하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의 당해 수요와 관련된 전기통신회선 설비의 유 지가 경영상 곤란해져서 공공이 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제1종 지정전기 통신설비와의 접속과 관련된 제4항제1호 ㅁ의 총무성령에서 정한 기능마다에 통화량 또는 회선수, 기타총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제14항에서의 『통화량』을 말한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13.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종 지정전기통 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회계를 정리하고 이것에 기초해 당해 접속에 관한 구지상황, 기타 총무성령에서 정한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 14.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제5항에서 규정한 접속료에 있어서는 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할 때 마다, 이 것 이외의접속료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 사업년도의 회계를 정리한때에, 통화량 등의 기록 및 동항의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의 결과에 기초해 제4항 제2호의 총무성령에서정한 방법에 다라 산정된 원가에비추어 공정, 타당하게 하기 위해접속료를 재계산해야 한다.
- 15.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타 전기통신사업자는 타 전기통신 사업자가 그의 전기통신설비와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족에 노력해야 한다.
- 1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 을 받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2 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 자의 이익이나 공공이익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업무 방법의 개선과 그 밖의 조 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지행위 등)

제37조의2 ①총무대신은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의3 제2 항이 규정하는 제2종 지정전기통 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 신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2종 지 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 통신역무 제공업무에 관한 최근 1년간의 수익 액수의, 해당 전기 통신역무에 관한 업무구역과 동 일한 구역내의 모든 동종의 전기 통신역무 제공업무에 관한 해당 1년간의 수익 금액을 합산한 금 액에 점하는 비율이 총무성령이 정하는 비율을 넘을 경우에, 해당 비율의 추이와 기타 사정을 감안 하여 타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 정한 경쟁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를 제 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 적용 을 받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 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을 해제해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제38조의 기통신사업자가 그의 지정된 날 이후 최초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을 접속약관에서 정한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 대해서는 동항 중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하는 때에도 같다』를 『전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대신에게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로 한다.

1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의 지정된 날 이후 최초로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총무대신에게 신고할 접속약관에서 정한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 대해서는 동항중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도 같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로 한다.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6항의 규정에의해 대체 적용하는 제2항의 규정에의해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인가의 신청을 한 접속약관에 대한총무대신의 인가가 있은 날 또는전항의 규정에의해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약관을 신고한 날중늦은 날(이하 이항에서는『기산일』이라 한다)에 실제로 체결하고있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협정 중당해 새롭게 지정된 전기통신설비

- 2 제2항이 규정하는 제1종 지정 전기통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 기통신사업자는 다음에 드는 행 위를 해서는 안된다.
- 1.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업무에 관해 알게된 해당 타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해당업무용으로 제공하는 목적 외의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
- 2. 그 전기통신업무에 대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하 게 우선적인 취급을 하거나 이 익을 주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 이익한 취급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 3. 타 전기통신사업자(제90조 제1항 각 호에 드는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 포함)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그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규율하거나 간섭하는 것 ④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또는제38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해당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제38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제1종 전기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 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이 정하는

와의 접속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9항의 규정은 기산일로부터 기산해서 3개월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제34조 총무대신은 총무성령이 정한 바 에 따라, 그의 한쪽 끝이 특정이동단 말설비(총무성령에서 정한 이동단말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 다)와 접속되는 전송로설비 중 동일 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서 그의 전송로설비에 접속되는 특정 이동단말설비의 수가, 그 전송로설비 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와 관련된 업무구역과 동일한 구역 내에 설치되 어 있는 모든 동종의 전송로설비에 접속되는 특정이동단말설비 수 중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총무성령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것 및 당해 전기통 신사업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 서 총무성령이 정한 총체를 타 전기 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적정 하고 원활한 접속을 확보해야하는 전 기통신설비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전기 통신설비(이하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라 한다)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해, 당해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해야할 요금 및 접속조건에 대하여 접속약관을 정하여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바에 따라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수지상황 및 기타 회계에 관해 총무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표 해야 한다.

- 제37조의3 ①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제1종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법인일 경우에는 그 임원은 해당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자회사,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자회사,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또는 해당친회사의 자회사(해당 제1종전기통신사업자 제외)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일 경우 총무대신이지정하는 것(이하 '특정관계사업자'라 함)의 임원을 겸해서는 안된다.
 - ②전항의 『자회사』 또는 『친회사』 란 각각 상법 제211조의2 제1항 에 규정하는 자회사 또는 친회사 를 말한다.
 - ③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제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 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법인일 경우로 한함. 이 이 조에서는 동 일)는 다음에 드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단, 총무성령이 정하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이다.
 - 1. 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혹은 보수, 토지 및 이에 정착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이용 또는 정보제공에 대하여 특정 관계사업자에 비해 타 전기

- 3. 총무대신은 전항(제6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접속약관이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 기간을 정해 당해 접속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①제2종 지정전기통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것과 그의 전 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타 전기통신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적정 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때 ②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 비와의 접속장소(箇所)의 기술적 조 건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 지 않은 때
 - ③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을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인가가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때
 - ④제2종 지정전기통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할 금액이 효 율적인 경영하에서 적정한 원가에 적어한 이윤을 더한 것을 초과하는 것일 때
 - ⑤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 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때
 - ⑥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 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있 는 때
- 4.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제6항의 규 정에 의해 대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 있어서도 같 다)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접속약관 에 의하지 않고, 타 전기통신사업자 와 제2종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통신사업자에 불리한 취급을 하 는 것

-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매개, 승계 또는 대리 기타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의 업무 수탁에 대해 특정 관계사업자에 비해 타 전기통신사업자에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
- ④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제1종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해당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 ⑤제38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제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3항의 규정의 존수를 위해 강구 한 조치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해 총무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총무 대신에게 보고해야한다.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와의 접속)

- 제38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당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 비를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해야하는 취지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한다.
 - 1. 전기통신역무의 원만한 제공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 2. 해당 접속이 해당 제1종 전기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 관한 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해서는 안된다.
- 5.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 고한 접속약관을 공표해야 한다.
- 6.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 통신사업자가 그의 지절된 날 이후 최초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총무 대신에게 신고할 접속약관에서 정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할 금액 및 접속조건에 대해서는 동항중 『그의 실지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같다』를 『전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로 한다.
- 7.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 통신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대제 적용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약관의 신고를 한 날(이하 이 항에 있어서는 "신고일』이라 한다)에 실제로 체결하고 있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협정중 당해 새로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은 신고일로부터 기산해서 3개월간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등에 관한 명령 등) 제35조 총무대신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당해 타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전2호 든 경우 외에 총무성령 이 정하는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제38조의2 ①총무대신은 총무성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국의 구 역을 나누어 전기통신역무의 이 용상황 및 도도부현의 구역을 감 안하여 총무성령이 정하는 구역 마다 그 일부분이 이용자의 전기 통신설비와 접속되는 전송로설비 중 동일한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가 설치하는 것이며 그 전송로설 비의 전기통신회선의 수의, 해당 구역 내에 설치된 모든 동종의 전송로설비의 전기통신회선의 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총무성 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것 및 해당 구역에 있어서 해당 제1 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이것과 일 체적으로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 로 총무성령이 정하는 총체를 다 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 비와의 접속이 이용자의 편리향 상 및 전기통신의 종합적이고 합 리적인 발전에 부족하지 않은 전 기통신설비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 기통신설비(이하 '지정전기통신설 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제1종 전 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지정전기통 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해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취 득해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는 '접속료'라 한다) 및 접속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 선설비와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 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협정체 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당해 협의가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협정의 체결을 신청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 는 때에는, 제32조 각호에 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및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의 신청이 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 당해 타 전 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 협의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하는 것으로 한다.

- 2. 총무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있어서, 그의 일방이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협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일반이 그의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당해 협의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일방의 전기통신사업 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그의 접속이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의 신청이 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 타 일방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의 협의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다.
- 3.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의 접속에 관해 당사자가 취득하거 나 부담해야하는 금액 또는 접속조 건, 기타 협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 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 신사업자는 총무대신의 재정을 신청

- 조건(제4항에 규정하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을 제외)에 대하여 접속 약관을 정하여 총무대신의 인가 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 ③충무대신은 전항의 인가신청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항의 인가를 해야 한다.
- 1. 다음 각 사항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것.
 - 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 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것이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가능 한 접속개소 중 표준적인 것 으로 총무성령이 정하는 개소 에 있어서의 기술적 조건
 - 나. 총무성령이 정하는 기능마 다의 접속료
 - 다.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것과 그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 라. 가에서 다까지 든 것 이외에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원만히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총무성령이 정하는 사항
- 2. 접속료가 효율적인 경영하에서 의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총무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된 원가에 비추어 공정타당한 것일 것
- 3. 접속조건이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가 그 지정전기통신설비에 자신 의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기로

-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15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신청 을 한 후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4.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은 경우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 담해야하는 금액 또는 접속조건, 기 타 협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당사 자간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은 때에 는 당사자는 총무대신의 재정을 신 청할 수 있다.
- 5. 총무대신은 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취지를 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6. 총무대신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 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7. 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재정이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8. 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 중,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그 재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여 그 금액의 중감을 청구할 수 있다.
- 9. 전항의 소송에서는 타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 10. 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취 득하거나 부담해야하는 금액에 대 한 불복을 그 재정불복의 이유로 할 수 없다.

한 경우의 조건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을 것

4.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인 취급을 하지 않을 것

④전항 제2호의 총무성령이 정하 는 방법(동항 제1호 나의 총무성 령이 정하는 기능 중, 고도 신규 전기통신기술의 도입에 의해 제1 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의한 해당 기능에 관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 효율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총무성령이 정 하는 기능에 관한 접속료에 대하 여 정하는 것에 한함)은 제1종 지 정전기통신설비를 통상 이용할 수 있는 고도 신규 전기통신기술 을 이용한 효율적인 것이 되도록 새롭게 구성한 경우에 해당 제1 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의해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 비에 의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 무에 관한 통화량 또는 회선 수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비용을 감안하여 원가를 산 정해야 한다.

⑤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접속료 및 접속조건 중그 내용으로 보아 이용자의 편리향상 및 전기통신의 종합적이며합리적인 발달에 비치는 영향이비교적 적은 것으로 총무성령이정하는 것에 대해서 접속약관을정하여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변경 또 는 추가에 관한 계획)

제36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기능(총무성령이 정한 것을 제외한다)의 변경 또는 추가계획이 있는 때에는 총무성령이 정한바에 따라, 그 계획을 당해 공사의 개시일의 총무성령에서 정한일 전까지는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신고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 2.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계획을 공표해야한다.
- 3. 총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경우에 그 신고한 계 획의 실시에 의해 타 전기통신사업 자의 전기통신설비와 제1종 지정전 기통신설비와의 원활한 접속에 지 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 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 계획을 변경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

제37조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산사업자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와 당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새로

게 신고해야한다. 이를 변경하려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⑥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접속약관(이하 이 조에서 '인가접속약관 등'이라 함)에 의하지 않으면 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⑦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가접속약관 등에 의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해당 인가접속약관 등이 정하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과 다른접속료 및 접속조건(제2항이 규정하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 해당하는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항 각호(제1호 가 및 나 제외)에 적합한 것에 한함)의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⑧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 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접속약관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⑨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인가접속약관 등에 의해 타 전기통신사업자간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당해 지정의때에 실제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하고 있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중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것을 총무성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제38조 총무대신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그 일방이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일방이 그 협의에 응하 지 않거나 당해 협의가 조정되지 않 은 경우에, 당해 일방의 전기통신사 업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은 경우에 는 그 공동사용이 공공의 이익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56조 제1항에서 준용한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신청이 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 타 일방의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해 그 협의의 개시 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다.

2. 제35조 제3항에서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접속조건』은 『공동사용조건』으로, 동조 제3항중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으로, 『제155조 제1항』은 『제15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5조 제1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제2항』은 『제38조 제1항』으로 대체

고해야 한다.

①제1종 지정전기통신사업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는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제3항 제1호 나의 총 무성령이 정하는 기능마다 통화량 또는 회선수 기타 총무성령이 정 하는 사항(제12항에 『통화량 등』 이라 함)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①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하는 제1종 전기통신서업자는 총 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 속에 관한 회계를 정리하거나 이 에 입각한 해당 접속에 관한 수

지 상황 기타 총무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②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이 규정하는 접속료에 대해서제2항의 인가를 받은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성령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그 외의 접속료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회계를 정리했을 때 통화량 등의기록 및 동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정리의 결과에 입각한 제3항제2호의 총무성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원가에 비추어공정 타당해야 한다.

③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타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전기통신설비와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

하는 것으로 한다.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하는 준용) 제39조 제35조 제3항에서 제10까지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은 도매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35조 제3항 및 제4 항 중 "접속조건」은 "제공의 조건」으 로, 동조 제3항 및 제4항과 전조 제1 항 중 『협정』은 『계약』으로, 제35조 제3항중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은 "전기통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으 로, 『제155조 제1항』은 『제156조 제2 항에서 준용하는 제155조 제1항』으로, 동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은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1항』 으로, 전조 제1항 중 『그의 공동사용』 은 "그의 제공』으로, "제156조 제1항』 은 『제15조 제2항』으로 대체하는 것 으로 한다.

(외국정부 등과의 협정 등의 인가)
제40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외국법인과 전기통신통신역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에 있어서 총무성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체결,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무대신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해야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 정전기통신설비의 지정 시에 해 당 제1종 지정전기통설비를 설치 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체 결하고 있는 타 전기통신사업자 와의 협정 중 해당 제1종 지정전 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것 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 은 협정으로 간주한다.
- 1. 제3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협정
-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에 의해 체결된 협정
- ⑤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였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해제 시에 체결하고 있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중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였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38조 4 제1항의규정에 따라 신고한 협정으로 간주한다.
- 인가접속약관 등에 의해 체결 된 협정
-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협정
- ⑥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였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해제 시에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였던 전기통신설

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은 제38 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으로 간주한다.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 제38조의3 ①총무대신은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단이 특 정이동단말설비(총무성령이 정하 는 이동단말설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동일)와 접속되는 전송로 설비 중 동일한 제1종 전기통신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 전 송로설비에 접속되는 특정이동단 말설비의 수의, 그 전송로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구역과 동일한 구역 내에 설 치되어 있는 모든 동종의 전송로 설비에 접속되는 특정이동단말설 비 수 중에 점하는 비율이 총무 성령이 정하는 비율을 넘는 것 또는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 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 로 총무성령이 정하는 총체를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와의 적정하고 원활한 접속을 확 보해야하는 전기통신설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기통신설비(이하 '제2종지정전기통 신설비'라 함)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제2종 지 정전기통신설비와 타 전기통신사 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해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가 취득해야하는 금액 및 접속조 건에 대하여 접속약관을 정하여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 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할 때에 도 마찬가지이다.

- ③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접속약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 해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접 속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1. 제2종 지정전기통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는 타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 2.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 치하는 제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해야하는 금액이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적정한 원가로 적정 한 이윤을 가한 것을 초과한 것
- 3. 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 당한 조건을 부과한 것
- 4.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인 대우를 한 것 ④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이하 이 조에서 '신고접속약관'이라 함)에 의하지 않으며타 전기통신석비와의 접속에 협정을체결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⑤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

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 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접속약관을 공표해야 한다.

- ⑥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접속약관에 의해 타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지정 시에 해당 제2종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하고 있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중 해당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협정으로 간주한다.
- 1.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협정
- 2. 다음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에 따라 체결한 협정
- ⑧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였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해제 시에 체결하고 있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의협정 중 해당 전기통신설비와의접속에 관한 것으로 신고접속약관에 의해 체결하고 있는 것은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협정으로 간주한다.
- ⑨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였던 전

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제1 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해제 시에 정하고 있는 접속약관 중 해당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한 것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은다음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으로 간주한다.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협정) 제38조의4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및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 제외)의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총무성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한다. 단,다음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에 의해해당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할 때에는 예외이다.

②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설비(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및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 제외)와 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 비와의 접속에 관한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해야할 금 액 및 접속조건에 대해 접속약관 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 는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 해야한다.

③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을 공표해야 한다.

④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접속약관에 따라 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등에 관한 명 령 등)

제39조 ①총무대신은 전기통신사업 자가 제1종 전기통신사업에 대해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협 정의 체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가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해 당 협의가 조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는 제38조 각호 에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를 제외하고 해당 제1종 전 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 협의 개 시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②총무대신은 전항이 규정하는 경 우 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일 경우 또는 당 사자 쌍방이 국내 특별 제2종 전 기 통신사업자(특별 제2종 전기통 신사업자이며 자국 외의 장소간 의 통신을 행하기 위한 전기통신 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을 운영 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함)일 경 우를 제외)에 있어서 그 한 쪽이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에 관한 협 정의 체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쪽이 그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해당 협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로, 한 쪽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그 접속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8조의13 제1항의 규정에따른 중재신청이 되어 있을 때를제외하고 다른 한 쪽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 협의의 개시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다.

③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 신설비와의 접속에 관해 당사자 가 취득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금 액 또는 접속조건 그 외의 협정 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 협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 신사업자는 총무대신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제 88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후에는 예외이다. ④전항이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

④전항이 규정하는 경우 외에 제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었을 경우 에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해야하는 금액 또는 접속조건 그 외 협정의 세 부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협 의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는 당사 자간은 총무대신의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⑤총무대신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신청을 수리했을 때, 그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

고 기간을 지정하여 답변서를 제 출하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 ⑥총무대신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을 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⑦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이 있었을 때는 그 재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가 조정되었다고 간주한다.
- ⑧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 중,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해야하 는 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재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소송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⑨전항의 소송에서는 다른 당사 자를 피고로 간주한다.
- ①제3항 또는 제4항의 재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당사자가 취득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불복을 그 재정불복의 이유로 할 수 없다.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계획)

제39조의2 ①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기능(총무성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의 변경 또는 추가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계획을 해당 공사의 개시일인 총무성령이 정하는 일수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신고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때도 마찬가지이다.

②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

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전항의 규 정에 따라 신고한 계획을 공표해 야 한다.

③총무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었을 경우, 그 신고된 계획의 실시에 의해 다른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와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원만한 접속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서업자에 대해 그 계획을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협정 등) 제39조의3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와 전 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는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②총무대신은 전항의 협정이 공 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일 때에는 동항의 인가를 해야한다. ③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지정 시에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에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체결하고 있는 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특별 제2종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중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것으로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은 제1항의 인가를 받은 협정으로 간주한다.

④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석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체결하고 있는 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중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것으로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은 다음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협정으로 간주한다.

⑤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타 전기 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제외)의 공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제1종 전기통신석비를 설치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일반 제2종 전기통신식하다와 해당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전기통신설비의 공용 등에 관한 명령)
제39조의4 ①총무대신은 전기통신사 업자간(당사자의 한 쪽 또는 쌍방 이 일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일 경우 및 당사자 쌍방이 국내 특 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일 경우 를 제외)에 있어서 그 한 쪽이 전 기통신설비의 공용에 관한 협정 의 체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 고 다른 한 쪽이 그 협의에 응하 지 않거나 해 당 협의가 조정되 지 않을 경우로 해당 일방의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의가 있었을 경우에 그 공용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8조의14 제1항에 준용하는 제88조의13 제1항의 규정에따른 중재신청이 되어 있을 때를제외하고 다른 한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 협의의 개시또는 재개를 명할 수 있다.

②제39조 제3항에서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전기통신설비의 공용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접속조건』은 "공용조건』과, 동조 제3항 중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은 "제1종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과, "제88조의13 제1항』은 "제88조의14 제1항에 준용하는 제88조의13 제1항』과, 동조 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은 "제39조의4 제1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하는 계약)

제39조의5 ①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총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다음 항의 규정에따라 신고한 계약약관에 의해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예외이다.

- ②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도매 전기통역무에 관한 요금 및 기타 제공조건에 대해 계약약관을 정 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총 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전에 총무대신에게 신고해 야 한다.
- ③총무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한 계약약관이 정하는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조건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이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계약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④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계약약관 을 공표해야 한다.
- ⑤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계약약관에 따라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총무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준용)

제39조의6 제39조 제3항에서 제10 항까지 및 제39조4 제1항의 규정 은 도매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9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접속조건』 은 『제공조건』과, 동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39조의4 제1항 중 『협 정』은 『계약』과, 제39조 제3항 중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는 전기 통신설비를 설치하는』은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과, 『제88조의13 제1항』 은 『제88조의14 제2항에 준용하는 제88조의13 제1항』과, 동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은 『제39조의4 제1항』과, 제39조의4 제1항 중 『그 공용』은 『그 제공』과, 『제88조의14 제1항』은 『제88조의14 제2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외국정부 등과의 협정 등의 인가)
제40조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 및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외
국정부 또는 외국인, 외국 법인과
의 사이에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으로 총무성령에
정한 중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
는 것을 체결,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
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 Axel Kammholz, *Bundeskartelamt, Das Bundeskartelamt als Regulierer?*, in Vortrag im Rahmen der Euroforum-Konferenz: Telecommarkt Deutschland vor der Lizenzvergabe § 12, p. 18 (Feb.1996).
- Axel Spies and Jan F. Wrede, "THE NEW GERMAN TELECOMMUNICATIONS ACT", 4 Mich. Telecomm. Tech. L. Rev. 1 (1997/1998).
- Carl B. Kress, "Toward More Competitive Markets in Telecommunication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49 Fed. Comm. L.J. 551(April, 1997).
- Charles H. Kennedy, An Introduction to U.S. Telecommunications Law 3 (1994).
- Commission Directive 90/388/EEC of 28 June 1990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 Computer III Remand Proceedings, Report and Order, 5 FCC Rcd. 7719 (1990).
- Computer Inquiry I, Final Decision and Order, 28 F.C.C.2d 267 (1971).
- Council Directive 90/387/EEC of 28 June 1990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l market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open network provision.
- Craig D. Dingwall, *The Last Mile: A Race for Local Telecommunications Competition Policy*, 48 Fed. Comm. L.J. 105, 120 (1995).

- Douglas B. McFadden, Antitrust and Communications: Changes Aft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9 Fed. Comm. L.J. 457, p. 460.
- Herbert Hovenkamp, Ferderal Antitrust Policy(west publishing co.,1994).
- In re Computer Inquiry II, Second Computer Inquiry Final Decision, 77 F.C.C.2d 384 (1980).
- In the Matter of Computer III Remand Proceeding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C Docket No. 90-368, 5 FCC Rcd 5242 ,August 6, 1990 Released; Adopted August 3, 1990; As Corrected August 10, 1990.
- Joachim Scherer(ed), Telecommunications Laws In Europe (BAKER & McKENZIE,1995).
- Michael K. Kellogg et al.,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Little, Brown & Company Limted, 1992).
- Richard E. Nohe, "A Different Time, A Different Place: Breaking Up

 Telephone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48 Fed.

 Comm. L.J. 307 (March, 1996).
- Thomas G. Krattenmaker,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49 Fed. Comm. L.J. 1.
- Thomas G. Krattenmaker,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Sec.ed., (Carolina Academic Press, 1997).
- Thomas J. Hall, "THE FCC AND THE TELECOM ACT OF 1996: NECES-SARY STEPS TO ACHIEVE SUBSTANTIAL DEREGULATION", 11 Harv. J. Law & Tec 797(Summer, 1998).

Elizabeth A. Nowicki, "COMPETITION IN THE LOCAL TELECOMMU-NICATIONS MARKET: LEGISLATE OR LITIGATE?", 9 Harv. J. Law & Tec 353(Summer, 1996), pp.356-358.

Steven C. Salop, "Exclusionary vertical restraints law: Has economics matt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83, no.2(May 1993).

경쟁과 규제, 한국전자통신연구소(1995).

김재홍외 3인 공저, 세계화시대의 정보통신사업(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999년 정보통신부 정기국회보고자료.